碩士學位論文

指導敎授 金三鎭

韓國 美容師 免許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Amelioration of the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in Korea

2003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徐 喜 媛

碩士學位論文

指導敎授 金三鎭

韓國 美容師 免許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Amelioration
of the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in Korea

위 論文을 패션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徐 喜 媛

徐喜媛의 藝術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定함

2003年 6月 日

審査委員長 김 지현

審 査 委 員 高慧禎

審 査 委 員 全 三 鎭

<국문초록>

韓國 美容師 免許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指導敎授 : 金三鎭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徐喜媛

본 연구는 미용사면허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문제라는 인식하에 현행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미용사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미용사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미용사업무와의 밀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용사에 관한 제도와 미용업의 영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면허권자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면허체계를 정비해서 면허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일원화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현행법에서의 면허요건은 일정한 학업과정을 이수한 자들과 미용사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다시 면허를 부여해야 하는 이중적인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정비하여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면허요건에서 삭제하고 미

용사면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셋째로 무시험 면허부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수준의 학업성과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면허제도와의 형평성에서 현저한 불공정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넷째로 미용사면허시험은 미용사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험관리업무는 의료인등의 면허제도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미용사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한다. 현행법중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거 응시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미용사면허 시험제도는 한결같이 일정한 기간의 미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용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만이 미용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피부미용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피부미용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피부미용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업계의 실상을 살펴볼 때 반드시 피부미용사를 독립하여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 독립된 미용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미용사제도와 미용업의 영업에 관한 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크게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미용사면허제도와 미용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독립된 미용사법을 조속히 입법하여야 한다.

1961년 '이용사및미용사법'으로 미용사면허제도를 입법화한 이래 40여년

간 미용사면허제도는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순 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미용 수준이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용사면허의 공신력을 높이고 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위에 제시한 개선안들이 입법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 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방법 및 범위 ····· 3

제2장 면허제도의 일반이론 ····· 4

제1절 면허제도의 법적성질 ····· 4

Ⅰ. 면허의 개념 ····· 4

Ⅱ. 면허제도의 의의 ····· 5

제2절 면허의 운영실태 ····· 7

Ⅰ.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 8

Ⅱ. 시·도지사등의 면허 ····· 17

Ⅲ. 기타 면허 ····· 19

제3절 면허와 자격의 비교 ····· 26

Ⅰ. 운영목적상의 비교 ····· 26

Ⅱ. 운영체계상의 비교 ····· 27

Ⅲ. 취득요건상의 비교 ····· 29

Ⅳ. 직업활동영역의 한계 비교 ····· 32

Ⅴ. 국가기술자격과 면허의 관련성 ····· 34

제3장 한국 미용사면허제도 ····· 36

제1절 현행 한국 미용사면허제도 ····· 40

Ⅰ. 면허권자 ····· 40

Ⅱ. 면허요건 ····· 41
Ⅲ. 면허효과 ····· 46
Ⅳ. 처벌조항 ····· 48
제2절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변천과정 ····· 51
Ⅰ. '이용사및미용사법'에서의 면허제도 ····· 51
Ⅱ. '공중위생법'에서의 면허제도 ····· 53
Ⅲ.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면허제도 ····· 54

제4장 주요 외국의 미용사면허제도 ····· 56
제1절 일본의 미용사면허제도 ····· 56
제2절 미국의 미용사면허제도 ····· 60
Ⅰ. 뉴욕주의 미용사면허제도 ····· 61
Ⅱ.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면허제도 ····· 63
Ⅲ. 미국의 자격교육제도 ····· 65
제3절 유럽국가의 미용사면허제도 ····· 71
Ⅰ. 독일의 미용사면허제도 ····· 71
Ⅱ. 영국의 미용사면허제도 ····· 72

제5장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4
제1절 미용사면허권자에 관한 문제 ····· 85
제2절 미용사 면허종목에 관한 문제 ····· 88
Ⅰ. '피부미용사면허'의 필요성 ····· 88
Ⅱ. '피부미용사면허제도' 방법론 ····· 91
Ⅲ. '피부미용사면허'의 독자성 ····· 94
제3절 미용사 면허요건에 관한 문제 ····· 97
Ⅰ. '자격제도' 일원화안 ····· 97

Ⅱ. 수정 이원적 자격체계안 ····· 99
Ⅲ. 면허제도 일원화안 ····· 101
Ⅳ. 무시험 면허부여 제도의 폐지 문제 ····· 102
제4절 미용사 면허시험에 관한 문제 ····· 105
Ⅰ. 미용사면허시험 시행방법의 문제 ····· 105
Ⅱ. 미용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의 문제 ····· 106
Ⅲ. 미용사면허시험 시험과목의 문제 ····· 109

제5절 독립된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 ····· 112

제6장 결 론 ····· 116
ABSTRACT ····· 119
참 고 문 헌 ····· 122

<부록1> 일본의 미용사법(한글) ····· 128
<부록2> 日本美容師法(일본어) ····· 137

《 표 목 차 》

<표2- 1> 면허의 구분 예시 ····· 7
<표2- 2> 의료인등의 면허요건 ····· 9
<표2- 3> 의료인등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 10
<표2- 4> 약사·한약사의 면허요건 ····· 11
<표2- 5> 약사·한약사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 12
<표2- 6> 의료기사등의 면허요건 ····· 13
<표2- 7>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 14
<표2- 8> 위생사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 15
<표2- 9> 영양사 국가시험 검정방법 ····· 16
<표2-10> 영양사 국가시험 검정 세부내역 ····· 17
<표2-11> 면허의 종류 ····· 25
<표2-12>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응시자격요건 ····· 30
<표2-13> 면허요건에 따른 분류 ····· 31
<표2-14>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등급별 종목현황 ····· 33
<표3- 1> 미용에 관한 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 현황 ····· 42
<표3- 2> 미용에 관한 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 현황 ····· 43
<표3- 3> 미용에 관한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현황 ····· 44
<표3- 4> 면허종목별 결격사유의 비교 ····· 45
<표3- 5> 미용사업무범위에 관한 개정명령안 ····· 47
<표3- 6> 면허와 관련한 벌칙규정 ····· 49
<표5- 1> 의료·보건관련 면허의 면허권자에 따른 분류 ····· 86
<표5- 2> 일본 미용사양성시설의 교과목과 표준수업시간수 ····· 106
<표5- 3> Curriculum for Cosmetology Course in California State ··· 108
<표5- 4> 공중위생영업소수 ····· 114
<표5- 5> 미용사기능사 자격취득 통계 ····· 114
<표5- 6> 미용장기능장 자격취득 통계 ····· 115

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법률로써 미용사면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 12월 5일 법률제798호로 제정된 '이용사및미용사법'에 의해서였다. 이 법률은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으며,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미용사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동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용사면허 발급제도는 1961년도에 제정된 '이용사및미용사법' 이후에 체계화되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수정을 거치면서 현행제도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에 걸쳐 제도의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속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미용사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 둘째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면허시험제도로 대체할 것인지의 문제, 셋째 무시험면허부여제도를 폐지하여 면허시험제도로 일원화할 것인지의 문제, 넷째 미용사면허시험제도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다섯째 미용사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여섯째 피부미용사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 일곱째 독립된 미용

사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편, 면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신규 진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의 특성이 있다.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는 면허제도는 그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볼 때 중세의 길드규제와 신분에 따라 직업선택의 영역이 정해진 인도의 카스트제도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로 인해 면허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신규 진입자들에 대해 여하히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와 기득권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면허제도의 일반적인 법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미용사면허제도와 관련한 입법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미용사면허제도에 대한 입법태도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미용사면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에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미용사 면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선행 연구 논문과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검토하는 문헌적 비교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면허제도의 일반이론으로, 면허제도의 법적성질과 면허의 운영실태, 면허와 자격의 비교 등을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한국 미용사면허제도를 분석하면서, 현행 한국 미용사면허제도를 면허권자·면허요건·면허효과·처벌조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아울러서 입법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외국의 미용사 면허제도를 비교검토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한국 미용사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미용사면허권자에 관한 문제, 미용사 면허종목에 관한 문제, 미용사 면허요건에 관한 문제, 미용사 시험에 관한 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한편, 그 각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한 제6장에서는 한국 미용사 면허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책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올바른 정비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면허제도의 일반이론

제 1 절 면허제도의 법적 성질

I. 면허의 개념

'미용사면허'와 같은 종류의 '면허'는 비록 실정법에서 '면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문상으로는 이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의 하나인 '허가'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정법이론상의 '허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1)]

행정법에서의 '허가'는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2)] 이러한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던 바를 해제하는 행위로서, 이를 '경찰허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용사면허'의 개념도 이와 같은 '허가'의 개념과 동일하다. 즉, '미용'이라고 하는 업무는 인체와 관련된 위험한 업무의 일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이 업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금지를 해제하여 업무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정행위인 것이다.

한편, 실정법에서 '면허'[3)]로 규정되어 있는 '허가'는 허가의 대상에 따라 대

---

1) 이한웅, "미용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미용학회 포럼자료, 2000.12, p.2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서울 : 박영사, 2002, p.297.

인적 허가 · 대물적 허가 · 혼합적 허가로 구분되는데, '미용사면허'의 경우는 허가의 대상 내지 기준 되는 사항이 특정인의 능력 · 기술 같은 주관적인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인적 허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면허'(허가)가 가져오는 법률상의 효과는 전통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어 왔다.[4] 즉, 미용업무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여 미용사로 하여금 미용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뿐, 그 업무와 관련된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용사면허 취득자가 경영상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는 반사적 이익일 뿐이므로, 이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쟁송의 방식으로 다툴 수는 없다.

Ⅱ. 면허제도의 의의

'면허제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무행위를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하는 힘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면허제도'가 존재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의 생명 · 건강 · 안전 · 질서와 관련된 업무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5] 즉, 이러한 종류의 업무행위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그 업무행위의

---

3)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이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두와 행정기능의 변화에 따라 그 때그때 제정된 수많은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이론상의 개념이 실정법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실정법상의 용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법적 의미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실정법상의 제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에 대한 이론상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법령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기능과 법적 성격을 갖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만 한다. '미용사면허'의 경우도 의사면허, 약사면허, 간호사면허 등과 함께 비록 실정법은 '면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행정법 이론상 '許可'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인 것이다[이한웅, 전게자료, p.3.].

4) 홍정선, 전게서, p.302.

5) 이승우, "각종 면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2권, 서울 : 한

자유를 허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질서도 파괴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정 업무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 그 자유를 제한하여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다만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국가가 그 금지를 해제하여 업무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기득권자들이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면허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면허제도'는 기본적으로 생산자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리하여 어떤 직업에 대한 '면허제도'를 도입하도록 입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세력은 '면허제도'가 없어서 손해를 본 일반대중이나 그 직업의 종사자들에 의한 남용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직업의 종사자들인 것이다. 또한 '면허제도'의 운용 역시 그 업종의 구성원들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면허제도는 일종의 중세 길드제도와 같은 규제로서 국가가 그 직업의 구성원들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생산자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활동을 위한 영향력에서 일반대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면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공법학회, 2000, p.285.

제 2 절 면허의 운영실태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하는 직업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상 '의료법'), 약사, 한약사(이상 '약사법'),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이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생사('위생사에관한법률'), 영양사('식품위생법') 등 17종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면허하는 직업으로는 미용사와 이용사(이상 '공중위생관리법') 등 2종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하는 조리사('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면허라는 이름으로 허가되는 직업 및 행위는 25종이 있다.[6]

한편, 면허를 전문직면허와 단순직면허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표2-1> 면허의 구분 예시[7]

자격종류	내 용	인증주체	인증근거	기능적특징	체계성	사 례
전문직면허	직무중심	국 가	성취도테스트 경력사정	정부/전문직 단체 중심	비체계적	공인노무사 세무사
단순면허	행위중심	국 가	성취도테스트 경력사정	정부중심	비체계적	운전면허

자료 : 정기오(2001). " 인적자원정책 : 개념과 그 이론적 준거의 검토"

<표2-1>에서의 면허의 분류는 직무중심인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의 자격

6) 이에 해당하는 면허는 다음과 같다. :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이상 농림부장관 면허), 주조사(국세청장 면허), 도선사,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이상 지방해양수산청장 면허), 설계사(산업자원부장관 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감독자면허(이상 과학기술부장관 면허),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이상 해양경찰청장 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수렵면허(이상 시·도지사 면허),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운전면허(이상 지방경찰청장 면허).

7) 신용철, "면허와 자격과의 비교 연구",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p.44.

을 전문직면허로 분류하고, 운전면허와 같은 행위중심의 면허를 단순면허로 세분화한 것인데, 이 분류방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는 행위중심인 '단순면허'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면허들에 대한 개개의 면허요건과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하는 직업으로는 '의료법'상의 의료인, '약사법'상의 약사와 한약사, 그리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상의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의 면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인등의 면허

'의료인'(醫療人)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8]

의사(醫師)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치과의사(齒科醫師)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 한의사(韓醫師)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 조산사(助産師)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 간호사(看護師)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종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9]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는 일정한 면허시험인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은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이

8) 의료법 제2조 제1항.
9) 의료법 제2조 제2항.

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의사 면허시험은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10]

즉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는 일정한 학업을 이수한 자들에게만 면허시험인 국가시험에의 응시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자들의 경우는 해당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산사(助産師)면허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등이 면허시험인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한다.[11]

<표2-2> 의료인등의 면허요건

구 분	취 득 요 건
의 사 치과의사 한 의 사	·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과의학사·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중 국가시험 합격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중 예비시험과 국가시험 합격자
조 산 사	·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중 국가시험 합격자
간 호 사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중 국가시험 합격자

간호사(看護師)면허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등이 면허시험인 간호

10) 의료법 제5조.
11) 의료법 제6조.

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한다.[1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하며,[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표2-3>과 같다.

한편, 의료법은 위의 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여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표2-3> 의료인등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구 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점	문제형식
의 사	3	500	1점/1문제. 단, 보건의약관계법규 ; 0.5점/1문제	490	객관식 5지 선다형 및 R형
치과의사	13	364	1점/1문제. 단, 구강생물학 ; 0.5점/1문제	340	객관식 5지 선다형
한 의 사	11	400	1점/1문제	400	객관식 5지 선다형
간 호 사	8	330	1점/1문제	330	객관식 5지 선다형
조 산 사	4	200	1점/1문제	200	객관식 5지 선다형

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약사·한약사 면허

약사법은 '약사(藥師)'를 한약(韓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방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약사(韓藥師)'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14]

12) 의료법 제7조.
13) 의료법 제9조.
14) 약사법 제2조.

약사(藥師)의 면허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면허시험인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등이 받을 수 있다.[15]

한약사(韓藥師)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을 수 있다.[16]

<표2-4> 약사·한약사의 면허요건

구 분	취 득 요 건
약 사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한 약 사	·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지 못한다.[17]

그리고 면허시험인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하며,[18] 이 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한다. 이들 국가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표2-5>와 같다.

15) 약사법 제3조.
16) 약사법 제3조의2.
17) 약사법 제4조.
18) 약사법 제7조.

<표2-5> 약사·한약사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약 사	12	300	1점/1문제	300	객관식 5지선다형
한 약 사	5	250	1점/1문제	250	객관식 5지선다형

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의료기사등의 면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의료기사'(醫療技士),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 '안경사'(眼鏡士)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의료기사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나뉘어 있다.[19]

또한 의무기록사는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하며, 안경사(眼鏡士)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20]

이러한 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위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시험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1]

1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
2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표2-6> 의료기사등의 면허요건

구 분	취 득 요 건
의료기사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그런데 의료기사등의 면허는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1호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가 존재했었다. 즉,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1년 이상 수습한 자"이거나,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 이상 수습한 자"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 개정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종전에는 의료기사등의 인력과 관련학과 졸업자가 부족하여 관련학과 졸업자외에 일정한 수습을 한 자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의료기사등의 인력과 관련학과 졸업자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폐지함."이라고 폐지의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 법의 개정은 미용사면허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면허의 해당분야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이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인력이 충분하게 배출된 후에는 목적의 달성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한편, 면허시험인 국가시험은 매년 1회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하며,[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를 관리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표2-7>과 같다.

그리고 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23]

<표2-7>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시 험 종 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 제 형 식
임상병리사	필기	8	200	1점/1문제	200	· 필기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객관식 4지선다형
	실기	1	50	2점/1문제	100	
방사선사	필기	8	200	1점/1문제	200	
	실기	1	50	2점/1문제	100	
물리치료사	필기	6	200	1점/1문제	200	
	실기	1	40	2.5점/1문제	100	
작업치료사	필기	6	200	1점/1문제	200	
	실기	1	40	2.5점/1문제	100	
치과기공사	필기	9	225	1점/1문제	225	·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객관식 : 20 주관식 : 1	2점/1문제 60점/1문제	40 60	· 객관식 4지선다형 · 기공물 제작
치과위생사	필기	5	200	1점/1문제	200	·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객관식 : 35 주관식 : 1	2점/1문제 30점/1문제	70 30	· 객관식 4지선다형 · 스켈링 기능 측정
안 경 사	필기	4	130	1점/1문제	130	· 필기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객관식 4지선다형
	실기	1	50	2점/1문제	100	
의무기록사	필기	4	200	1점/1문제	200	
	실기	1	40	2.5점/1문제	100	

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2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4. 위생사 면허

위생사등에관한법률에서의 '위생사'(衛生士)란, 인체의 발육·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국가시험전일까지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면허시험인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4]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2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를 관리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2-8> 위생사의 국가시험 검정방법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필기	5	200	1점/1문제	200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0	2.5점/1문제	100	객관식 4지선다형

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편 위생사에 대한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26]

24)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5)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26)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

5. 영양사 면허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양사'(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면허시험인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7]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를 관리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표2-9>와 같다.

<표2-9> 영양사 국가시험 검정방법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9	300	1점/1문제	300	객관식 5지선다형

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영양사면허제도는 통상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뒤에 면허를 취득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미용사면허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 두 면허제도를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영양사면허제도에서는 일정한 학문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실이 면허시험인 영양사자격시험 응시요건에 해당할 뿐이지만, 미용사면허제도에서는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과 대학교 등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둘째, 영양사면허제도에서의 면허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미용사면허제도에서의 면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라는 점에 차이

27) 식품위생법 제37조.

를 보이고 있다.

셋째, 영양사면허의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용사면허의 결격사유는 여기에 금치산자를 더 추가해 놓았다.

<표2-10> 영양사 국가시험 검정 세부내역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시험시간
1교시	영양학(60), 생화학(20), 식품위생관계법규(20)	식사요법(40) 생리학(20)	160	객관식	120분
2교시	식품학및조리원리(50), 식품위생학(20),	단체급식관리(50) 영양교육(20)	140	객관식	105분

자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Ⅱ. 시·도지사등의 면허

현행법상 보건분야 면허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면허하는 분야는 '미용사'를 비롯하여 '이용사'와 '조리사'가 있다. 그러나 조리사의 경우는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7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거 2003년 8월 27일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조리사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종목으로 분류하고자 하며, 따라서 보건분야의 면허중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는 종목은 '미용사면허'와 '이용사면허'로 국한된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용사면허 및 이용사면허

미용사면허제도는 이용사면허제도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이·미용사면허의 경우는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경우, 또는 미용사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8] 그러나 이용사면허의 경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이용에 관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을 생각할 때, 일정한 학교의 졸업을 요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미용사면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용사면허는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본 논문 제3장 이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 조리사면허

식품위생법에 의한 '조리사(調理師)면허'는 2003년 8월 26일까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부여하지만, 2003년 8월 27일부터는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7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격하된 점에 대해서는 미용사면허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단순히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다"는 취지만을 밝히고 있으나,[29] 시·도지사의 경우 조리사업무감독 등과 관련하여 면허권 이외의 다른 권한이 없었던 반면에 주로 권한이 시

---

28)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29) 식품위생법개정법은 2001.10.29.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2002.4.19.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되었다.

장·군수·구청장에게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면허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 것은 면허업무의 합리화를 가져온 결과로 본다.

미용사면허의 경우도 조리사면허와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즉, 미용사업무감독등에 관한 권한이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불합리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용사면허의 면허권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그리고 그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5장 제1절에서 하고자 한다.

한편,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먼저 얻은 뒤에 면허를 받아야 한다.[30]

조리사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은 기능사로는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등이 있으며, 기능장으로는 조리기능장이 있다.

Ⅲ. 기타 면허

1. 수의사 면허

가축도 인간과 거의 같은 해부학적, 생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을 전염시키기도 하는데, 가축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다.[31]

---

30) 식품위생법 제36조.
31) 신용철, 전게논문, p.62.

수의사법에서 수의사(獸醫師)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32]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면허시험인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33]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34]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농림부장관이 이를 시행하며,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시험관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하고 있으며, 시험과목은 모두 10과목으로, 수의내과학, 수의외과학, 수의약리학, 수의산과학, 수의전염병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의법규,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해부학 등이다.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가축인공수정사(家畜人工授精師)는 축산법에 의거 가축의 인공수정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혹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35]

---

32) 수의사법 제2조 제1호.
33) 수의사법 제4조.
34) 수의사법 제8조.
35) 축산법 제11조.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등이다.

3. 원자력관계 면허

인류의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원자력은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방사능이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며, 관리하고, 방사능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원자력발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방사선과 핵연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상에 면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36]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은 원자력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37]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면허로는 원자로,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 3개 분야에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등 7개 종류가 있다.

18세미만의 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면허취득이 제한된다.[38]

---

36) 신용철, 전게논문, p.59.
37) 원자력법 제91조.

4. 도선사 면허

산업발달에 따른 수출입 교역량의 증대는 해운운송사업의 발달을 가져오고, 이는 해상교통량의 증가를 유발시켰다. 따라서 복잡해져 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운행과 새로운 항로 개척 등 전문적인 해상교통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륜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선사 자격이 생겨났다.[39]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하며,[40] 도선사(導船士)라 함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41]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된다. 면허요건은, 총톤수 6천톤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고자 하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도선사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등이다.

도선사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 40% 이상, 전체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점수와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면접시험은 각 과목 40%이상, 전체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한편, 도선사는 정년의 규정이 있다.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선사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42]

---

38) 원자력법 제92조.
39) 신용철, 전게논문, p.61.
40) 도선법 제2조 제1호.
41) 도선법 제2조 제2호.

5.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43] 운전면허에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제1종, 제2종)가 있다.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18세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6세미만),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44]

---

42) 도선법 제7조.
43) 도로교통법 제68조.
44) 도로교통법 제70조.

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45]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46] 즉, 3톤 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는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의 교육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는 이론 8시간, 실습 16시간의 교육만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는[47], 18세미만인 사람,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7. 기타의 면허

그 외에 해기사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주조사면허,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수렵면허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각의 면허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2-11>과 같다.

---

45)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46)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학원은 건설교통부 건설기계과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0월말현재 전국적으로 65개가 있으며 지역별 현황은 서울(1), 부산(6), 대구(4), 인천(5), 광주(2), 대전(2), 울산(3), 경기(14), 강원(2), 충남(4), 충북(4), 전북(2), 전남(2), 경남(4), 경북(10). 제주(1)

47)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표2-11> 면허의 종류

면 허 종 목	법 적 근 거	면허인증기관	시험시행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
약사, 한약사	약사법	〃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	〃
위생사	위생사등에관한법률	〃	〃
영양사	식품위생법	〃	〃
조리사	〃	시장·군수·구청장	-
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	시·도지사	-
이용사	〃	〃	-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시·도지사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면허, 핵연료물질취급 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 방사성 동위원소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감독자 면허	원자력법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도선사	도선법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 연구원
수의사	수의사법	농림부장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시·도지사	시·도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주조사	주세법	국세청장	국세청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지방경찰청장	-
수렵면허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시·도지사	시·도

제 3 절 면허와 자격의 비교

미용사면허는 면허요건중에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다. 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미용사 면허를 한다고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뒤에 또 다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면허와 국가기술자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Ⅰ. 운영목적상의 비교

미용사 직업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런 뒤에 다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토록 이중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자격과 면허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자격의 목적은 개인의 직업능력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함에 두고 있으며, 이 중 국가기술자격은 그러한 자격능력을 국가가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면허는 국민의 생명, 건강, 질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직업군에 대한 진입규제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즉, 면허의 대상이 되는 직업활동중에 특정한 행위가 국민의 생명, 건강, 질서,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인에게는 해당 행위를 금지시키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면허다.

자격과 면허의 운영목적상의 차이는 미용의 경우처럼 인정 대상 직업이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일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미용업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업금지 대상업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의 부여는 단지 직업능력만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 영업의 자유를 해제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만 '미용사'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영업의 자유를 회복하는 결과가 된다.

Ⅱ. 운영체계상의 비교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오랫동안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나, 1997년에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그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자격제도가 다원화 체계로 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고 있으며,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외 국가자격'으로 분류된다. 민간자격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순수민간자격'과,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민간자격', 그리고 사업체 근로자의 특정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내 자격인 '사내자격'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국가기간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공급과 관련된 종목,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 특정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나 자격 응시자가 적어 자격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종목, 자격의 수요는 적으나 산업의 발전추세를 예측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는 종목,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종목 등의

영역을 담당한다.[48]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의 16개 소관부처별로 관장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을 관장하고 자격제도의 총괄적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분야의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자격검정은 국방부장관에 위탁되어 실시되고 있고, 16개 종목별 소관부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와 관련되어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자격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는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술·기능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5등급, 그리고 서비스 분야는 사업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직무로 구분된다.[49]

'민간자격'은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분야별 산업체 등의 전문적 관리 능력이 축적되어 자격증의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신 전문직 자격과 같은 관련 산업계의 인적 수요는 있으나, 정부부문에는 전문적 검정제도가 없어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객관적 자격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제한종목에 들지 않는 특수업종 분야에 자격제도가 필요한 경우, 관련업종 분야 단체 등에서 창설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면허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각각의 면허별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 주무부처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미용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 하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사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요건을 구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48) 서준호 외, 민간자격정보,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p.12.
49) 김순원 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활용도 조사",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p.5.

그런데, 미용사면허는 미용과 관련한 민간자격 취득을 배제한 채 국가기술자격의 취득만을 요건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미용과 관련한 민간자격 취득은 단지 직무능력의 수준만을 인정해 줄 뿐, 미용업에 관한 영업의 자유를 회복하는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된다.

Ⅲ. 취득요건상의 비교

국가기술자격은 서비스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등 5등급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이 제한이 없으나 산업기사시험에서부터는 요구하는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학력과 자격에 따라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사의 응시자격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6년,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력에 관계없이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해당된다.

기능장의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가 해당된다.

기사의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른 종목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전문대 졸업자로 졸업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수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가 해당된다.

<표 2-12>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응시자격요건

자격등급		응시자격
기술·기능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 + 6년이상 실무경력 · 기능사 + 8년이상 실무경력 · 4년제 대학졸업 + 7년이상 실무경력 · 전문대학 졸업 + 9년이상 실무경력 · 11년이상 실무경력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
	기능장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 · 산업기사 + 6년이상 실무경력 · 기능사 + 8년이상 실무경력 · 11년이상 실무경력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
	기사	· 산업기사 + 1년이상 실무경력 · 기능사 + 3년이상 실무경력 · 다른 종목의 기사 자격 취득자 · 4년제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 + 2년이상 실무경력 · 산업기사 수준의 교육훈련 이수 + 2년이상 실무경력 · 4년 실무경력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자(106학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 2년이상 실무경력
	산업기사	· 기능사 + 1년이상 실무경력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산업기사 수준의 교육훈련 이수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명장으로 선정된 자 · 2년 실무경력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문대학졸업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또는 41학점이상 취득)
	기능사	· 응시자격 제한 없음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의해 명장으로 선정된 자,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가 해당된다.[50]

이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요건은 <표 2-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반면 면허는 면허종류별로 취득요건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체계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가기술자격에 비해 보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적으로 국가시험이라고 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와 같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국민생활의 생명, 질서, 안전에 밀접한 관련된 분야에서는 면허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 또한 공통된 사항은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반면에 면허는 국가시험이라고 불리는 면허시험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 혹은 교육기관 이수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표2-13> 면허요건에 따른 분류

유 형	국가(면허)시험 합격	국가기술자격 취득	교육훈련 이수	경 력
해당면허	· 의료분야면허 17종 · 원자력관계면허 · 도선사면허 · 해기사면허 · 수의사면허 · 가축인공수정사 · 주조사면허 · 운전면허 · 수렵면허	· **미용사면허** · 이용사면허 · 조리사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설계사면허 · 가축인공수정사면허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 **미용사면허** · 이용사면허 ·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도선사면허 · 설계사면허 · 해기사면허

※ 면허요건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갖고 있는 면허는 미용사, 이용사, 도선사, 설계사 등이다.

50) 김순원 외, 전게서, pp.6-7.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전문대학·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운전면허의 취득, 설계사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경력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Ⅳ. 직업활동영역의 한계 비교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직업활동의 영역을 한계 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기술자격의 취득만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영업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격취득자의 기능·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 속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관련 직업활동에 제약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야의 자격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자신의 직업영역과 연계하여 활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51] 전기기술자로서 취업한 사람이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본다거나 컴퓨터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실용화한다고 해서 컴퓨터관련 종사자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안한 것으로 높게 평가될 것이다.

---

51) 신용철, 전게논문, pp.75-76. : 현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자격취득 후 직무수행능력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후 관리 제도가 미비하고 자격의 유효기간 미설정 등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유도 기능이 미흡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격의 유효기간 설정 또는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거나 사업면허 관련 종목 등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향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은 자격 미소지자와의 차별화로 산업현장에서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실무와 검정기준간 괴리를 좁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검정기준을 현장직무에 맞게 보완해야 하고, 아울러 산업체의 전문가를 자격제도 개선 및 문제출제 등에 많이 참여시켜 현장의 요구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14>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등급별 종목현황

직무분야 \ 자격등급	총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문사무	
							1급	2급(단일등급)
총 계	601	97	33	104	138	214	5	10
1. 기계	122	10	10	15	31	56	-	-
2. 금속	48	6	6	7	10	19	-	-
3. 화공및세라믹	20	5	1	4	5	5	-	-
4. 전기	20	5	2	4	5	4	-	-
5. 전자	17	3	1	4	5	4	-	-
6. 통신	20	1	1	5	6	7	-	-
7. 조선	9	3	-	1	1	4	-	-
8. 항공	9	2	1	1	1	4	-	-
9. 토목	30	11	-	4	4	11	-	-
10. 건축	34	4	2	3	7	18	-	-
11. 섬유	31	6	2	4	10	9	-	-
12. 광업자원	16	4	-	3	4	5	-	-
13. 정보처리	9	2	-	2	4	1	-	-
14. 국토개발	13	4	-	4	3	2	-	-
15. 농림	39	6	1	9	9	14	-	-
16. 해양	23	4	-	9	6	4	-	-
17. 산업디자인	9	1	-	3	3	2	-	-
18. 에너지	6	3	-	2	1	-	-	-
19. 안전관리	19	7	1	5	5	1	-	-
20. 환경	13	4	-	4	4	1	-	-
21. 산업응용	38	5	-	10	8	15	-	-
22. 교통	3	1	-	1	1	-	-	-
23. 공예	22	-	1	-	4	17	-	-
24. 음·식료품	11	-	2	-	1	8	-	-
25. 위생	5	-	2	-	-	3	-	-
26. 전문사무	15	-	-	-	-	-	5	10

※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서비스계 제외

※ 산업응용분야 "지구물리기술사+응용지질기술사" →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통합

그러나 변호사자격을 비롯한 전문자격을 포함한 면허의 직업활동 영역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이들의 경우 그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 직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만약 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면 불법의 문제가 된다. 예컨대 미용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조리사면허만

을 취득한 사람은 미용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은 <표 2-14>와 같이 기술·기능분야의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교통, 공예 및 서비스 분야의 음·식료품, 위생, 전문사무 등 26개 분야 601 종목에 이르고 있다.

V. 국가기술자격과 면허의 관련성

자격과 면허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운영목적, 기능, 직업활동의 범위 등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실제 활용측면에서는 두 제도가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며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다.

첫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면허의 전제조건인 경우가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이·미용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축산법상의 가축인공수정사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상의 설계사가 해당 경우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중 일부종목은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미용사면허나 조리사면허의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면허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자격별로 법에 의해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하거나 훈련을 이수하여도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가축인공수정사의 경우에는 축산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시·도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설계사 면허는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1급 설계사면허는 전기분야 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

득과 3년 이상의 전력기술업무 경력이 있어야하고 2급 설계사 면허는 전기분야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전력기술업무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급 화약류책임자면허는 화약류제조기사자격 취득자, 2급 화약류책임자면허는 화약류제조산업기사자격 취득자, 3급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는 화약류제조기능사 자격취득자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도 역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화약류관리기술사 또는 화약류관리기사,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 3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화약취급기능사자격을 취득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학력요건을 대체하기도 한다.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 관계 면허가 이에 해당된다.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감독자면허 등 7가지 면허가 있는데 방사성동위원소특수면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면허의 자격응시 요건중 학력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중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 산업기사는 이공계 전문대 졸업, 기사는 이공계 대졸로 각각 인정해 주고 있다.[52]

52) 신용철, 전게논문, pp.77-79.

제 3 장 한국 미용사면허제도

한국의 미용사면허제도는 1961년도에 '이용사및미용사법'이 제정되면서 입법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8년 11월에 미용사 양성기관으로서는 최초의 교육기관인 '경성미용학교(京城美容學校)'가 설립되었으며,[53] 해방 이후에 김상진(金翔鎭) 선생이 '현대미용학원'을 설립하였고, 권정희(權貞姬) 선생이 '정화고등기술학교'를,[54] 그리고 임형선(林亨善) 선생이 '예림여자고등기술학교'를[55] 설립하여 초기 미용사 양성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또한 1930년경에 오엽주(吳葉舟) 여사가 일본에서 미용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경성의 종로에 있는 화신상가 2층에서 '엽주미용실'[56]을 개설하였는데, 당시 미용실은 요금이 비싸 주로 기생과 여염집 부인, 여교사, 졸업한 처녀 등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1930년대 이화학당 학생들이 단발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젊은 여성들까지도 미용실 출입이 빈번해졌고, 당시 일본에서 들어온 히사시가미(일명 챙머리)가 유행하였고, 퍼

---

53)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 청년사, 2000, p.315

54) 정화고등기술학교는 1952년 7월 1일 정화학원으로 설립되어 동년 9월 30일 정화고등기술학교로 인가를 받아 권정희 선생이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1953년 6월 30일에는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미용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1954년 12월 31일 재단법인 정화학원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초대 이사장에 한창윤 선생이 취임하였으며, 2001년 2월 12일 정화미용예술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인터넷 http://www.mivongschool.com/sub03.htm에서 인용].

55) 예림여자고등기술학교는 1954년도에 설립되었다. 설립자 임형선 선생은 우리 나라 최초의 미용사인 오엽주 선생에게 사사하고 두 번째 미용사가 된 분으로, 6.25 한국전쟁 때 부산 피난시절 기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고 교육을 통해 미용인을 키워 내려는 꿈을 갖고 미용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 [http://www.sarangsae.co.kr/yelimhome/yelim/yelim1-1.htm에서 인용].

56) 일부 자료에서는 오엽주가 개설한 미용실명칭을 '화신미용실'로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전게서, p.315.), 오엽주가 인터뷰한 조선일보 1972년 4월 20일자 신문에서 오엽주는 '엽주미용실'이라고 그 이름을 밝힌 바 있다.

머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57]

오엽주 여사는 한국인 최초의 미용사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기록은 미용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행히도 조선일보 1972년 4월 20일자에 "고국의 여름을 찾아 온 '개화기 최초의 미용사' - 40여년전 종로에 미용실차린 오엽주 여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여기 전재해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사 오엽주(64)여사가 호노룰루에서 17일 귀국, 반도호텔 831호실에 묵고 있다. 오여사는 40여년전 미용실을 열고 한국여성의 긴머리, 쪽머리를 잘라 파마를 해 주며 새로운 여성미 창조에 앞장섰다. '개화기 여성지도자, 최고 멋장이 일류 기생들'을 단골로 가졌던 오여사였다. 그는 지난 50년 미국에 귀화, '죽기 전에 고국에서 여름을 보내기위해' 귀국했다.

"예쁘게 찍어 주세요. 가까이서 찍으면 주름살이 나와요." 아직도 예쁘게만 보이고 싶은 오여사의 제스처가 조금도 노망스럽지 않다. 눈화장, 헤아스타일, 옷맵시등이 5미터쯤 멀어지면 기껏 대접해야 40대다.

기억도 희미하나 대충 42년전쯤이다. 종로 화신상회 2층에 엽주미용실을 냈다. 당시만 해도 본정통(충무로)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미용실이 3개밖에 없을 때였다. 오여사는 미용실을 내기 전 프랑스에서 미용술을 공부하고 온 사람의 개인교수를 일본에서 받았었다. 1년 후 미용실이 불탔다. 다시 일본에 가 미용술을 연구, 전기파마를 배워왔다. 종로 영보빌딩 4층에 '엽주미용실'을 새로 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벌였다. 동경 긴자(銀座)의 일류미용실을 뺨칠 만큼 일류시설을 갖췄다.

오여사를 가장 좋아 한 층은 일류기생들. 기생들은 모두 쪽지고 다닐 때여서 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았었다. 오여사는 기생쪽을 싹뚝 잘라 짧은 머리에 웨이브를 넣어 주었다. 낮엔 학생티가 나게 해주고 밤에 기방에 나갈 때만 쪽머리 가발을 얹어 주었다.

왕년의 가수 리꼬랑(李香蘭)양이 단골이었고 이름을 밝히기 쑥스러운 개화기 여성지도자들 모두가 '엽주미용실'을 찾았다. 가난한 여배우들에겐 무료로 머리손질을 해줬고 촬영이 끝나면 그들은 오여사를 찾아 작은 기념품을 주곤 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자의 본능은 더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것이죠. 젊은 여성 모두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간절히 동경하던 때였어요" 그러나 부모들의 간섭으로 일반 규수들이 미용실을 찾기란 좀체 힘들었었다.

오여사는 처녀 때부터 남달리 미적 심미안이 발달한 여성이었다. 평양서문고녀를

57)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전게서, p.315.

졸업, 국민학교 교사로 있을 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머리를 부스스하게 하고 나오면 참지 못했다. 조회 때 학생들은 머리를 곱게 빗어 놓고 땋고 댕기를 드려야 했다. 오 교사가 담임했던 반 학생 중 평양기생이 많은 이유도 그 때 영향인 듯 하다고 오여사는 웃었다. 그 기생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서울에 와 선생님의 미용실을 찾았다.

오여사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쌍거풀 수술을 한 멋쟁이이기도 하다. 이미 맏딸 계원(桂媛. 미국명 카렌. 17일 함께 귀국.) 씨를 낳기 전에 쌍거풀 수술을 해 치웠었다. 계원씨는 올해 40세가 된다. 일본 여배우 몇 명이 쌍거풀 수술을 할 정도인 때였다. 그가 동경 마루노우찌 우쩌다 안과에서 '퍽 예쁘게' 수술에 성공하고 돌아오자 서울의 '공안과'에서 특별 초빙, 자세한 얘기를 듣고 쌍거풀 수술을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는 해방 직후까지 '엽주미용실'을 경영했고 한 때 서울시 미용사중앙심사위원으로 후배양성에 힘 쓴 일도 있다. 귀국 전까지 오여사는 호노룰루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딸 경원씨와 함께 있었다. '이마를 덮는 긴머리를 음식점에까지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은 도깨비를 생각나게 한다.'고 오여사는 요즘 서울 젊은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꼬집었다.

12년간 고국을 떠나 있으니 서울의 두 아들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고 쓰레기통에서 파리가 윙윙대는 것조차 마지막으로 봐두고 싶은 홈시크에 걸렸으나 정작 귀국 후 보게 된 것은 놀아운 발전상이라고. 다시는 못 올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여름을 지내면서 바람 한 점 없는 뙤약볕과 매미소리를 즐기고 고국을 떠나겠다고 오여사는 말했다. (조연홍기자)[58]

여러 기록으로 미루어 살피건대, 일본 강점기인 1930년대를 전후하여 이른바 현대적인 의미의 미용기술이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그와 아울러서 미용교육도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미용사양성은 '정화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된 6.25 한국전쟁기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조사된 바는 없으나, 당시 미용사 양성은 여성들의 갱생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배경은 1961년의 '이용사및미용사법' 입법에도 반영되었으며, 그로 인해 미용사면허 요건중에 미용사시험의 합격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미용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도 미용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

58) 인터넷 http://hairworld.co.kr/hairnews/news.cgi?cmd=view&r_no=88&news_db=journal에서 재인용.

다소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미용사면허에 대한 인식이 현행 법률에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하에서 현행법상의 한국 미용사면허제도를 살펴보고, 아울러서 입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변천되어온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현행 한국 미용사면허제도

현행 미용사면허제도를 규정한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이다.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59] 이 법의 규제 대상인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미용업을 비롯하여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60]

'공중위생관리법'은 법의 분류상 공법(公法)이며, 행정법중 일반행정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작용을 규정한 것인데, 미용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영업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의 규제대상인 공중위생영업 중 미용업과 이용업만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분석적인 상세한 논의는 제5장으로 미루기로 하며, 여기에서는 동법이 정하고 있는 미용사면허제도의 내용을 면허권자, 면허요건, 면허효과 그리고 처벌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Ⅰ. 면허권자

면허권자란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를 의미한다. 미용사면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61]가 면허를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중 광역자치단체장이

59)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60)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61) 이하 시·도지사라고 줄여 표기한다.

미용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면허권자인 것이다.

미용사면허를 시·도지사가 부여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으나, 미용사면허제도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즉, 6.25 한국전쟁기를 전후해서 시작된 미용사시험을 시·도지사가 주관하게 되면서 미용사면허는 자연스럽게 시·도지사가 부여하게 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체계가 아무런 비판 없이 현행법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미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용사면허 시험을 정부의 보건업무를 관장하는 부가 주도해야 할 정도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미용사시험을 주관할 수도 없었다. 시험의 관리나 공신력을 위해서는 부득이 시·도지사가 그 시험의 주관자가 되며, 면허권자가 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미용사면허의 면허권자를 시·도지사로 입법한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Ⅱ. 면허요건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 해당되어야 한다.[62]

---

6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미용사면허신청서'에 면허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의 경우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 첨부하는 서류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는 졸업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는 미용사 자격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와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등이 바로 그것이다.[63] 이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미용사의 면허를 하여 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학교는 4년제 대학교 8개, 전문대학 70개 등이다. 2003년 2월 현재 그 현황은 <표 3-1> 이하 <표 3-3> 등과 같다.

<표 3-1> 미용에 관한 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 현황

학 교 명	학 과 명	학 교 명	학 과 명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남부대학	향장미용학부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대전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건양대학교	패션디자인학부	중부대학교	토탈코디예술학과
경산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	진주국제대학교	인체예술학부

6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표 3-2> 미용에 관한 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 현황

학 교 명	학 과 명	학 교 명	학 과 명
강릉영동대	미용예술과	부산여대	피부미용과<주·야>
거창전문대	뷰티디자인과	부산정보대	피부미용과<주·야>
경도대학	피부미용과	삼육간호보건대	피부미용과<주·야>
경동정보대학	뷰티디자인과<주·야> 체형피부관리과	서라벌대	뷰티코디네이션학부
경북과학대	향장보건계열	서울보건대	뷰티아트과<주·야>
경북전문대	뷰티케어과	성화대	피부미용과<주·야>
경복대	피부미용과<주·야>	성덕대	코디피부미용과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코디메이크업계열<주·야>	선린대	피부미용과<주·야>
경인여대	피부미용과	송원대	뷰티코디네이션과<주·야>
공주영상정보대	코디메이크업과, 헤어디자인과	수원여대	미용예술과<주·야>
광양보건대	피부미용과	순천청암대	피부미용과<주·야>
광주보건대	피부미용과<주·야>	신성대	미용예술계열
구미 1대	피부미용과<주·야>	서해대	피부미용과<주·야>
군장대	피부미용계열<주·야>	안동정보대	피부미용과
김천과학대	뷰티디자인계열	안산공과대	뷰티디자인과<주·야>
김천대	뷰티아트계열	안산1대	뷰티아트과<주·야>
나주대	피부미용과	양산대	피부미용관리과
담양대	피부미용학부	용인송담대	스타일리스트과<주·야>
대구미래대	멀티뷰티코디네이션과<주·야>	우송정보대	피부미용과<주·야>
대경대	뷰티디자인과	원광보건대	미용피부관리과
동서울대	뷰티코디네이션과	전남과학대	피부미용계열
대구보건대	메이크업코디과	전주공업대	피부미용과<주·야>
대동대	피부미용과<주·야>	전주기전여대	실용예술학부<주·야>
대원과학대	메이크업코디과	정인대	미용예술계열
대전보건대	화장품과학과<주·야>, 피부미용과<주·야>	제주관광대	뷰티디자인과<주·야>
동강대	피부미용과<주·야>	제주한라대	피부미용과<주·야>
동남보건대	피부미용과	주성대	뷰티디자인과
동부산대	피부미용과	진주보건대	피부미용과<주·야>
동아인재대	보건계열	창원전문대	피부미용과
동우대	피부미용과	청양대	피부미용과<주·야>
동원대	피부미용과	춘해대	미용코디계열<주·야>
동주대	미용계열<주·야>	충청대	피부미용과, 다이어트건강관리과
마산대	뷰티케어과<주·야>	한영대	코디메이크업과
목포과학대	피부미용과< 주·야>	혜전대	피부미용과
신흥대	뷰티아트디자인과	혜천대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표 3-3> 미용에 관한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현황

학 교 명	학 과 명	학 교 명	학 과 명
연희미용고등학교	헤어디자인, 스킨케어, 메이크업, 네일케어&아트	경남미용고등학교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부산미용고등학교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미용예술과
한남미용고등학교	미용과	전남미용고등학교	피부미용과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피부미용과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경우도 있다. 즉, 면허증의 기재사항중 미용사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를 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즉,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면허증 원본,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1부를 첨부하며, 여기에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 없이 면허를 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64]

한편, 미용사면허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면허를 받을 없게 된다.[65] 즉, 금치산자,[66]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전염

64)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6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66) '금치산자'란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를 말하며, 심신상실(心神喪失) 상태로서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민법 제12조).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라고 해도 한번 선고를 받았다면 치료가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금치산자이다.

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 면허의 결격사유는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허의 종목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표3-4> 면허종목별 결격사유의 비교

면허종목	결 격 사 유
미용사면허 및 이용사면허	· 금치산자 ·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 결핵환자(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및 결핵환자
영양사면허 및 조리사면허	· 정신질환자 · 전염병환자 ·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의료인면허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약사·한약사 면허	· 정신질환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 의료인면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면허를 말한다.

* 의료인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심신박약자, 농자·아자·맹자,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의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등이었으나, 1987.11.28 개정법률에 의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 약사면허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농자·아자·맹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약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 등이었으나,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은 위의 표와 같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금치산자가 행한 일체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에게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면허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은 금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Ⅲ. 면허효과

시·도지사가 미용사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신학교 및 졸업년월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자격번호 및 등록연월일, 행정처분사항, 면허증의 재교부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게 된다.

미용사면허를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즉, 면허의 법적성질인 영업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어 미용업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서 미용업의 영업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미용업의 업무에 종사할 자유가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경찰금지 영업에 해당한다.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67] 또한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이 경우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업소외의 장소에서의 업무가 허용된다.

한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미용사는 헤어미용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과 메이크업, 매니큐어 까지도 독점적인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다.

---

67)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표3-5> 미용사업무범위에 관한 개정명령안

구 분	업무의 범위
공통미용부문	손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머리미용부문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피부미용부문	얼굴피부다듬기·전신피부다듬기·발피부다듬기·몸매가꾸기·제모하기(피부미용은 의료용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자료 : 2002.12.20자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명령안 입법예고사항[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02년 12월 20일자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명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동명령 제14조의2를 신설, 미용사의 업무를 공통미용부문, 머리미용부문, 피부미용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손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공통미용부문'으로,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를 '머리미용부문'으로, "얼굴피부다듬기·전신피부다듬기·발피부다듬기·몸매가꾸기·제모하기(피부미용은 의료용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를 피부미용부문으로 구분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둘째로, 영업을 개설할 자유를 얻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서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용업 개설절차에 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다가,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될 때 규제를 완화한 '통보제'로 개정하였던 것을 2002년 8월 26일 개정법에서 다시 '신고제'로 회귀하였다.

'통보제'의 경우는 통보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보'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미용사면허를 취득한 자들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신고제'는 미신고영업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규정으로 인해 이미 미용사면허에 의해 영업 또는 업무의 자유를 회복한 자들이 다시 규제를 본질로 하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이중적인 규제가 가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의무도 몇 가지 있다. 우선,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업소안에서 윤락·음란행위를 묵인하거나 그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등을 보관하지 말 것,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 피부미용을 위하여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등이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이다.

Ⅳ. 처벌조항

미용사가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한 때라든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그리고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면허취소 또는 6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는 3개월의 업무정지, 2차위반시는 6개월의 업무정지, 그리고 3차위반시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68]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된 기간만큼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이중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나중에 받은 면허를 취소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한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보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도지사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9]

한편, 미용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외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3-6> 면허와 관련한 벌칙규정

법정형량	위 반 사 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소를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 면허 없이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68)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69)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즉, '영업소를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면허 없이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 2 절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변천과정

Ⅰ. '이용사및미용사법'에서의 면허제도[70]

미용사면허를 규정하는 우리 나라의 법률은 '이용사및미용사법'으로 시작하여 '공중위생법', 그리고 현행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어져왔다.

국회에 최초로 '이용사및미용사법'이 제출된 것은 제5대 국회 때인 1961년 2월 16일이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1961년 5월 3일 회기불계속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서 미용업을 "파마넨트웨이브, 結髮, 美顔, 化粧 等의 方法에 의하여 容姿를 美麗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미용사면허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행하거나 미용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이 법안은 정치적 격동기에 제출되었던 탓에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만 것이다.

최초의 미용관련 법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 입법되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한 군사정권은 1961년 11월 8일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이 '이용사및미용사법' 법안을 제안하여 최고회의 제6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후 의결하였으며,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798호로 공포함으로써 미용사관련법이 햇빛을 보게된 것이다. 이 법 제3조는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2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이용사 및 미용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

---

70) 이한웅, "미용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미용학회 포럼자료, 2000.12, p.4이하. ; 이한웅, "한국 미용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대한피부미용교육학술지 창간호, 2003.5, pp.45-46.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고등기술학교 수료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제2호와 제4호에 대하여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제6대 국회인 1965년 7월 13일, '보조원'에 대한 규정과 '미용사 면허제 실시를 일원화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신형식 의원 외 11인의 이름으로 발의되었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1965년 10월 19일 상정되어 정부측 설명과 3차에 걸친 질의 및 토론을 벌였지만 1967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

이 법의 제1차 개정은 그로부터 10년 뒤의 일이었다. 1976년 5월 28일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미용업소 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벌칙을 조정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정부발의로 제안되어 보사위원회에서 수정되고 1976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가결 된 뒤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75호로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률에서의 특징은 고등기술학교에서 이·미용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 대해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던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과 미용업소 개설신고제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제3조를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였으며,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성기관수료자를 면허취득자격에서 제외하고, 고등기술학교 과정수료자 및 외국에서 면허 받은 자에 대한 별도의 시험제도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들이 무시험으로 면허를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의 제2차 개정은 1981년 4월 13일 '인허가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 등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었으며, 이 개정으로 인해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는 동

일한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용사및미용사법은 1986년 5월 10일 공포된 공중위생법의 제정으로 인해 그 6개월 뒤인 11월 10일 폐지되었다.

Ⅱ '공중위생법'에서의 면허제도[71]

공중위생법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과 1986년 4월 8일 국회 본회의의 수정가결을 거쳐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2호로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기존의 숙박업법·공중목욕장업법·이용사및미용사법·유기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련법률을 흡수·통합하고, 당시 자유업이던 세탁업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영업을 신고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입법한 법이었다. 이 법에서는 미용업을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이러한 위생접객업과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용품 및 백화점등 공중이용시설과 공동급수시설등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법 제9조에서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미용사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옮겼다.

이 법에 대한 제1차 개정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영장업을 이

71) 이한웅, 전게논문, pp.46-47.

법의 규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었다.

제2차 개정법률은 1989년 11월 16일 정부발의로 1989년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7호로 공포되었는데, 이 개정법률의 핵심은 이용업소에서의 퇴폐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데에 있었다. 그리하여 미용업의 경우도 신고업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제3차 개정법률은 1991년 3월 8일 '사행행위등규제법개정법률'에 의한 개정이었으며, 제4차 개정법률은 전문대학이상의 이미용학과 졸업자에게 무시험 면허취득자격을 인정한 입법이었다. 이 법 제9조 제1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신설한 것이다.

Ⅲ.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면허제도[72]

공중위생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특징은 미용사면허제도부문에서는 "외국에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삭제한 것 외에는 공중위생법과 동일하다. 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영업에 대한 시장진입의 장벽을 낮춘다는 의도로 미용업 개설의 경우 허가제나 신고제가 아닌 '통보제'로 입법한 특징을

72) 이한웅, 전게논문, p.47.

지니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5호로 제1차 개정이 있었으며,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의 제2차 개정에 이어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 6616호의 제3차 개정을 거쳐 그리고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6호로 개정된 제4차 개정법이 현행 법률이다.

제3차 개정법에서는 면허요건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제4차 개정법에서는 미용업 개설요건을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4 장 주요 외국의 미용사면허제도

제 1 절 일본의 미용사면허제도

일본은 1957년 6월 3일 법률 제163호로 제정된 '미용사법(美容師法)'과, 동년 8월31일 공포된 '미용사법시행령', 동년에 제정된 '미용사법시행규칙'[73] 등의 기본법령과 함께,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1998.1.27. 후생성령 제8호), '미용사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과 지정등록기관에 관한 성령'(1998.1.27. 후생성령 제9호), '미용업의 진흥지침'(1983.12.20. 후생성고시 제206호) 등의 명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하 일본의 미용사면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74]

일본의 '미용사법' 제3조는 '미용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용사시험은 후생노동대신이 실시하는데, 이 시험의 응시자격은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즉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자로,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미용사양성 시설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미용사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용사양성 시설에는 주간과정, 야간과정, 통신과정 등의 양성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둘 수 있으나 통신과정의 경우는 주간과정 또는 야간과정을 두는 미용사양성 시설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용사양성 시설 중에서 주간과정 또는 야간과정에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자에 있어서는 2년, 통신과정에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자에 있어서는 3년의

---

73) 동 시행규칙은 1998년 1월 27일자로 전부개정되었다.

74) 이하 '이한웅, 전게자료, pp.8-9.' ; 이한웅, 전게논문, pp.47-48.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미용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수험원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할 때는 반드시 지정을 받은 미용사양성 시설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용사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 필기시험 과목은 "① 관계법규·제도, ② 위생관리, ③ 미용보건, ④ 미용의 물리·화학, ⑤ 미용이론" 등이며, 실기시험은 '미용실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의해,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미용사시험에 이어서 실시되는 차기 미용사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일 및 장소 그리고 수험원서의 제출기한은 미리 관보로 공고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수험원서에는 지정을 받은 미용사양성 시설의 졸업증명서와 사진(원서 제출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정면으로 촬영한 가로 5센치미터 세로 4센치미터의 것으로, 뒷면에는 촬영연월일 및 성명을 기재할 것,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생노동대신은 미용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합격자 중에서 이른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후생노동대신의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미용사법이 정하고 있는 미용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심신의 장애에 의해 미용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행할 수 없는 자와, 무면허영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그리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호적등본이나 초본 및 주민표(住民票)의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사본, 그리고 정신기능의 장애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생노동대신은 미용사면허의 신청을 한 자가 정신기능의 장애에 의해

미용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지(認知), 판단 및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자에 대한 면허 부여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자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등에 의해 장애의 정도가 경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용사명부(美容師名簿)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명부에는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본적지 도도부현名(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국적), 성명·생년월일 및 성별, 미용사시험의 합격연월, 업무정지처분의 연월일·기간·이유 및 처분을 한 자, 면허취소처분의 연월일 및 이유, 재면허일 경우에는 그 취지, 미용사면허증 혹은 미용사면허증명서를 정정하거나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이유 및 연월일, 등록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 이유 및 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내에 2000년 10월 20일 현재 '미용사양성시설' 및 '이용사양성시설'은 후생성령 제9호에 의거 모두 251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 '미용사양성시설'의 교과과목과 표준수업시간은, 필수과목으로 8개 과목에 1,400시간, 선택필수과목으로 600시간, 총 2,0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관계법규·제도' 30시간, 위생관리 90시간, 미용보건 120시간, 미용의 물리·화학 90시간, 미용문화론 90시간, 미용기술이론 120시간, 미용운영관리 60시간, 미용실습 800시간 등이다.

교사의 자격도 과목별로 그 제한이 다르다. 특히 '위생관리'와 '미용보건' 과목은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미용의 물리·화학'도 약제사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법률체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그로 인해 한국의 입법과정에 일본법률이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미용사법에 관해서도 일본의 법률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미용사면허제도는 '미용사법'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

동대신이 지정하는 미용사양성시설에서 2,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미용사시험'에 합격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제 2 절 미국의 미용사 면허제도

미국의 경우는 주(州)마다 제도가 다르고 입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을 정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헤어분야와 피부관리 분야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헤어분야의 이수 시간은 1560~16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미국내 일부 미용학교에서의 미용교육 시간수는 이론 377시간, 실습 1,228시간, 모두 1,605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그리고 피부관리는 600시간으로 되어 있다.[75]

미국에서의 미용교육은 한국과는 달리 사회직업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다뤄지게 되며, 그로 인해 교양과목이 없이 모든 시간을 전공분야에 치중하는 전공 심화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직업학교내에 미용실이나 피부미용실을 개설하여 현장과 연결선상에서 직접 고객과 상담하고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용교육은 궁극적으로 미용사면허취득문제와 아울러 실무능력향상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의 미용사면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76] 이하에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면허제도를 살펴본다.

---

75) 김춘일 · 송선영,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방안", 濟州漢拏大論文集 23 1999.12, p.159.

76) 이하 '이한웅, 전게자료, p.9.' ; 이한웅, 전게논문, pp.48-49.

Ⅰ. 뉴욕주의 미용사면허제도

뉴욕주(New York State)는 '통합법'(Consolidated Laws)중 '일반상법'(General Business)에 미용사 및 미용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에서의 미용사 면허획득자(Licensee)란 이 법에 따라 미용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미용업과 관련된 주무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면허 신청자 및 예상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이 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무장관이 선정한 의사가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권한, 시험실시에 관한 규정 안내서를 제작하고, 그것의 사본을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권한 등이다.

미용사면허시험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취득을 원하는 자가 주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의 자격요건과 관계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하는 서류는, ① 주무장관이 정하는 크기의 신청인의 최근 사진 2매, ②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③ 신청인이 전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신청서 제출 전 30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진단서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주무장관이 정한 양식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④ 주무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초등교육 이수 증명서, ⑤ 교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취득했거나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미용학교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충족시키는 증명서. 또는 2년 이상 1인 이상의 면허소지 미용사로부터 직접적인 교육 및 감독을 성실하게 습득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신청서 제출 전 최소한 3년 이상 다른 주(州)나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실질적인 미용업무에 계속 종사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⑥ 주정부 인가 미용학교에서 발급한 교육부 인가 연구과정의 성공적인 이수 증명서. 이 증명서는 감염성 질병의 전염과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하수처리 및 소

독 방법, 특히 도구 및 장비와 관계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같은 이수 증명서 발급에 요구되는 필수 과목 내용은 주정부 인가 미용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통하거나 교육부에서 승인한 장거리 방식의 강의 및 시험으로 제공될 수 있다. ⑦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신청 요금, ⑧ 이 법에 따라 주무장관이 발급하는 필기시험 합격 증명서 등이다.

시험은 영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에 입각한 주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고, 시험은 최소한 네 장소에서 분기별로 실시된다.

면허신청인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경우, 그리고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장관은 법에서 부과하는 비용을 접수하고 미용업 종사를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미용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도 면허(owners'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미용실 소유 면허 신청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해당 업소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덕성과 업소의 위치, 업소의 공간배치 및 설비, 위생실태 및 주변환경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뉴욕주의 미용사면허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법에서 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다시 2년간 갱신할 수 있다. 만일 면허만료 후 1년 이내에 미용사 면허 갱신 신청서 및 요금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10달러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5년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격증제도는 토탈을 다룰 수 있는 미용사(Cosmetologist)와 피부관리(Skin care)만 전문으로 하는 피부관리사(Esthetician), 두발만 다루는 헤어 디자이너(hair stylist), 손톱만 전문으로 다루는 미조술사(Manicurist)등 각 영역별로 면허제도가 있다.

Ⅱ.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면허제도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State)는 '이용및미용법'(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를 두고 있는데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용사면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용실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rranging, dressing, curling, waving, machineless permanent waving, permanent waving, cleansing, cutting, shampooing, relaxing, singeing, bleaching, tinting, coloring, straightening, dyeing, applying hair tonics to, beautifying, or otherwise treating by any means the hair of any person.

(2) Massaging, cleaning or stimulating the scalp, face, neck, arms, or upper part of the human body, by means of the hands, devices, apparatus or appliances, with or without the use of cosmetic preparations, antiseptics, tonics, lotions, or creams.

(3) Beautifying the face, neck, arms, or upper part of the human body, by use of cosmetic preparations, antiseptics, tonics, lotions, or creams.

(4) Removing superfluous hair from the body of any person by the use of depilatories or by the use of tweezers, chemicals, preparations or by the use of devices or appliances of any kind or description, except by the use of light waves, commonly known as rays.

(5) Cutting, trimming, polishing, tinting, coloring, cleansing, or manicuring the nails of any person.

(6) Massaging, cleansing, treating, or beautifying the hands or feet of any person.

미용사시험의 응시 요건으로는, (1) 17세 이상의 나이일 것, (2) 공립학교의 10학년 이상을 마쳤든지, 아니면 이에 상당하는 학력일 것, (3) 법에

의해 거부되는 대상이 아닐 것, (4) 담당 국(bureau)으로부터 인가된 학교에서 미용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등이다.

미용사시험은 실기시험(practical demonstration)과 필기시험(written test)으로 치러지며,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에게는 담당 국에 의해서 미용사면허가 발급된다.

담당 국으로부터 인가된 미용학교는 실무훈련과 실무에서의 기술교육 등 적어도 1,600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의 종류는 미용사(Cosmetologist), 피부미용사(Esthetician), 미조술사(Manicurist), 제모술사(Electrologist) 등이 있다.

Ⅲ. 미국의 자격교육제도[77]

미국은 전통적으로 각 주의 지방치가 활성화되어 국가차원의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977년에 '직무능력관리위원회(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ency Assurance)'를 두고 기능장려책을 펼치고, 국가기술표준위원회(NSSB)가 조정을 맡되 철저하게 민간 기관들이 참여해서 국가기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격 평가와 자격 취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차원의 자격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가 생기기 시작하여 각종 입법활동으로 나타나 세계의 기술 수준에 맞추고, 세계의 자격 기준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본격적인 국가차원의 수립노력은 1990년에 미국 노동인력의 기능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Skill of the American Work force)에서 발간한 미국의 선택(America's Choice: High Skills or Low Wages)이라는 보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성장관, 교육성장관, 상업성장관, 산업계 대표 8명, 노동계 대표 8명, 인적자원 전문가 2명, 교육기관 2명, 지역연고기관 2명,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2명, 소수민족들의 권리들을 보호해 주는 시민단체 등 모두 28명으로 국가기술표준위원회가 구성되어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자격시험은 구두시험, 필기시험, 포트폴리오, 실기시험 등으로 평가한다. 자격평가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무, 국적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 민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직업군내에서 폭넓게 알아야 할 기술인 공통 기술, 한 개의 전공(concentration)을 포함한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위한 기술표준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공통+1(Core+1)자격'이 있으며, 어느 특정 직업에 적용되는 기술로 노동조합, 교육훈련기관 등 외부 집단에 의해 개발된다. 이 전문자격은 앞에서 언급한 공통자격과 직접 관련지어 개발된다. 이 기

77) 고혜정, "해외 미용관련 국제인증과정 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 수원여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과제, 2002.

술표준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갱신해야 하고, 최장 3년마다 한번씩은 갱신해야 하는 '전문(Specialty certificates)자격'이 있다.

1. 자격제도의 운영

(1) 국가기술표준위원회(NSSB)

1994년 공포된 국가기술표준법(NSSA)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직업군을 분류해 놓고 자발적으로 민간들이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다.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개발한 기술표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해 준다.

(2) 미국 국가표준연구원(ANSI)

비영리기관으로 미국기술표준을 개발할 때 의견 수렴과 검증을 해 주고 있다. 이 재단은 산하에 1,000개의 기업체, 30여개의 정부기관, 270여명의 학계, 노동계, 교육계, 소비자보호단체, 기술협회, 직종협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미국표준을 개발하거나 승인해 준다.

2. 미용직업교육 국가 인증기관과 자격

미국의 미용사 자격제도는 각 주정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16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각 주정부마다 인정하는 1-2년제 미용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시험을 치를 수 있다. 미국의 인증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CHEA산하 ASPA(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Accreditation)평가 인정기구안에 다음과 같은 미용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이 있다.

(1) COMTA(Commission on Massage Therapy Accreditation)

마사지 테라피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대한 독립적인 인증 위원회이며 AMTA(American Massage Therapy Association)의 산하 기관으로 마사지 테라피스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 COMTA는 USDE와 CHEA의 승인을 받았다. COMTA의 기능은 비영리의 독립적으로 인가과정을 통해 인증된 학교와 교육과정의 바디워크 교육과 마사지테라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준에 준하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인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AMTA는 COMTA 구성에 수단이 되었다. 위원회는 인가(accreditation)를 직업을 유지하고 개설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1994년에 COMTA는 AMTA의 독립적인 지부로 고유한 기능과 정책과 과정아래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COMTA의 위원들은 선출된 지원자들로 COMTA의 기준, 정책과 학교와 교육과정을 인가하는데 있어 최종결정을 한다. COMTA 위원들의 현장방문에서 COMTA의 기준에 준한다는 것을 증명되면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최장 5년간 유효하다. 인가받은 학교들은 정기적으로 최소 5년에 한번씩 COMTA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COMTA의 인가는 다섯 단계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 신청(Application)
- 인가를 위한 워크샵(pre-accreditation workshop)
- 셀프스터디(Self-study)
- 현장방문(On-Site Visit)
- 심의와 결정(Deliberation and Decision)

AMTA는 COMTA 구성에 수단이 되었다. 위원회는 인증(accreditation)

를 직업을 유지하고 개설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1994년에 COMTA는 AMTA의 독립적인 지부로 고유한 기능과 정책과 과정아래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COMTA의 위원들은 선출된 지원자들로 COMTA의 기준, 정책과 학교와 교육과정을 인증하는데 있어 최종결정을 한다. 교육과정 인증의 조건을 다음과 같다.

1. COMTA 기준에 준하여 최소 500시간의 CLASS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신청 전에 최소 두 CLASS 이상이 졸업하였여야 한다.
3. 신청 전 최소 2년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4. 졸업후 (POST-SECONDARY) 교육과정과 기관의 운영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NACCAS (NATIONAL COMMISSION OF COSMETOLOGY ARTS AND SCIENCES)

NACCAS는 델라웨어주의 자치단체로 본사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비영리적이고 자치적인 독립적인 인가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근본은 이 분야에서 두 개의 인가기관이 Cosmetology Accrediting Commission (CAC)로 합쳐지는 1969년으로 돌아간다. CAC는 1981년에 이름을 NACCAS로 바꾸었다.

NACCAs는 USDE로 부터 미용부분에 관하여 학교 졸업 후 직업고급 교육과정기관에 대한 국가인증기관 협회이다.

인증된 학교는 매 5년 마다 재평가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설립표준에 의해서 맞춰져야 한다. 만약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안에 수정되어야 하고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되지 않으면 협회에서 탈퇴하게 된다. 위원회는 재평가 작업을 1년에 2번하고 초기에는 1년에 4번을 한다. NACCAS에서 인증이 된 학교는 학생등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제공한다는 하나의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는 하나의 표시이며 협회에서 인증된 학교는 독립적인 항상 디렉터의 승인아래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NACCAS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USDE)에 의해 미용예술과 미용과학, 그리고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고교과정 후의 교육기관의 인가를 위한 국가 대리기관이며 현재 100,000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약 1000여개의 학교를 인가했다. 이 학교들은 NACCAS의 인가기준에 준하는 20여개 이상의 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학교인가는 COMTA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에서 제출한 레포트와 감사팀의 현장방문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COMATA와 마찬가지고 인가된 학교는 최장 매 5년마다 감사를 받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 시정기간 동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된다.

3. 전문가 민간협회인증 미용직업 자격

(1) NAHA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HOLISTIC AROMATHERAPY)

홀리스틱 테라피 국가협회는 교육적이고 실제 아로마테라피의 일반적인 인식을 넓히고자 만든 반 영리 집단이다. NAHA는 아로마테라피의 아카데믹한 표준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위한 실행을 하고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로마테라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서의 효과적인 응용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CIDESCO (Comite' international d'esthetique et de Cosmetology)

국제 피부관리협회는 1946년 핀랜드의 헬싱키에서 조직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쥬리히에 있고 CIDESCO국제기구가 하는 일은 첫째 세계 신정보 흐름의 교환과 국제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각 회원국 대표의 총회, 에스테틱에 관한 연구 발표, 각 회원국간의 요청시 교육강사 파견,

각종 기자재 재료의 전시회 및 세미나 Make-up Contest), 둘째 우리 기술의 해외 소개(지압, 경락, 발관리 등)하고, 셋째 국제 Cidesco Scbool 운영으로 국제피부관리사 디프로마를 취득함으로써 International Esthetician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CIDESCO 국제시데스코 디플로마란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과 경험을 상징하는 '시데스코 디플로마(CIDESCO Diploma)'는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말한다.

시데스코 디플로마를 수여받은 자는 시데스코 디플로마 뺏지와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플로마 보유자임을 광고 할 수 있다. 살롱을 경영하고 있는 시데스코 디플로마 보유자는 그들의 살롱을 시데스코 인정 피부관리실로 신청할 수 있다. 시데스코 시험은 먼저 이론의 필기시험과 실기 두 부분으로 나뉘며, 점수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Diploma는 시험 후 3개월 이내에 발행된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한번에 한해서 시험료 없이 다시 시험을 치룰 수 있다. 과정이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과정은 모든 CIDESCO의 필수과목 및 최소화 1200시간의 임상 및 이론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CIDESCO 시험은 이들 수업 후에 치러진다.

② 시험의 완전 합격은 600 시간의 전문미용 시설이 된 곳에서 600시간의 임상실습을 거쳐야만 완성되며 즉 전부 1800 시간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수학기간은 보통 1년이나 수학제도 또는 교과과정이 더 오래 걸리고 국가 혹은 학교에 있어서는 CIDESCO에 의해서 확인된 후 인정된다.

④ 교과과정이 2000시간 보다 많고 MODEL이나 고객이 임상 실험된 경우에는 CIDESCO DIPLOMA 신청 전에 필요치 않다.

제 3 절 유럽국가의 미용사면허제도

Ⅰ. 독일의 미용사면허제도

독일 일부 전문학교는 총수업시간이 2,232시간에 이를 정도로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372시간, 전공 이론과목은 독일이 868시간, 나머지가 전공 실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78]

독일의 경우는 직업학교가 잘 발달되어 있다.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혹은 1년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용학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정별 기간의 차이는 미용실 개업능력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1년제를 이수한 경우에는 미용실을 개설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용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이 이른바 미용사면허시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며, 시의 감독관이 직접 나와 진행하게 된다. 시험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이론시험에 합격한 자가 1년과정의 실습기간을 거친 뒤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기시험에 두 번 실패하게 되면 영원히 그 직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79]

독일은 두발과 피부 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며, 두발은 미용 기술 학원이나 학교에서 3년 코스중 1년반은 현장 실습과 연결되며 졸업후 테스트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후 현업이 가능하다. 피부관리는 1년 반 정도로 테스트 후 면허를 취득하여 현업에 종사하게 된다.[80]

---

78) 김춘일 · 송선영, 전게논문, p.159.
79) 이한웅, 전게자료, p.10. ; 이한웅, 전게논문, p.49.
80) 권영자, "전문대학 피부미용과 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권 제1호, 1995.

Ⅱ. 영국의 미용사면허제도

영국은 '미용사(등록)법'(Hairdressers (Registration) Act, 1964)이 있어서 이 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이 부여된다.

이 법에 의해 미용위원회(Hairdressing Council)에 미용사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기간의 수습 또는 기간을 마치거나, 미용위원회가 인가한 기관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자신이 신청서에 명시한 미용분야에서 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수습기간 또는 훈련과정 이수 중이 아닌 자로서 최소한 3년간 미용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미용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야 하며, 연계된 시험결과로서 시험이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한 후보자가 미용 실무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며, 이 자격증을 위원회가 인가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그 통과가 법에 따른 등록조건으로 간주되는 미용사 자격증 시험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용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 영국의 자격교육제도와 미용직업 교육관련 자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자격교육제도[81]

영국의 자격제도는 영역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일반직업(GNVQ)·전문직업(NVQ)자격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학

81) 고혜정, 전게논문, p.2.

생 및 근로자(NVQ)를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장려 정책을 펼쳐감으로써 숙련 기능인의 위상, 경제적 대우를 제대로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또한 '자격및교육과정관리공사'(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를 두어 자격증의 품질을 관리하면서 기능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사내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의 일원화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 내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평가자 자격제도 도입으로 검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다양한 사전 경험학습 결과를 인정하여 자격 취득에 반영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에 학력과 경력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미용부문은 미용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인 조치보다 민간 주도의 미용산업 기관인 'HABIA'(Hairdressing And Beauty Industry Authority)에서 운용하는 민간 자격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자격제도인 국가 직업자격(NVQ)의 틀 안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점차 NVQ와 GNVQ의 형태로 2원적인 제도로 점차 운용되고 있다.

미용 기능인 한 분야만 하더라도 미용전문학교인 '비달사순'을 졸업해서 기능인이 되고 나면 대학을 졸업해서 일반 사무직으로 입사한 사람보다도 더 전문가로 대접해주는 풍토, 전문가보다 오히려 높은 수입구조를 지닌 미용전문인들이 배출되는 선순환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2. 미용직업 교육관련 자격[82]

(1) 국가 인증 자격 프로그램

미용관련 직업 교육은 대개 '직업교육대학'(college)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립이며 이러한 학교에서 직업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CITY & GUIDES, EDEXCELL Foundation(BTEC),

82) 고혜정, 전게논문, pp.9-16.

RSA(Royal Society of Art)등과 같은 자격 평가 전문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정한 기관에 의해 그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1) NVQ(NATIONAL VOCATION QUALIFIACATION)

N.V.Q(National Vocational of Qualification)는 국가기술자격 고시위원회가 각 기술분야별로 주관하고 특정 업무에 요구되는 실무 능력 기준에 따라 수여되는 자격증이다. 영국에서 NVQ 자격을 발급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인증기관(Awarding body)은 우선적으로 자격교육과정원(QCA :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미용자격증과 달리 각 단계마다 레벨에 맞은 실무를 이해하고 기술을 익히게 되는 기초수준(1단계)부터 고급수준(5단계)까지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업무 능력 향상도와 기술을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해 평가되는 것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또한 이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감독관에 의해 실시되고, 직장 상사의 감독이나 개인의 실무 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나머지 자격과 관련된 일들은 모두 민간기구인 자격인증기관과 국가훈련기관 및 기준설정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다. 국가자격의 가장 중요한 최소의 사항만을 국가 또는 국가관련 기관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자격과 직무사이의 연계가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일류의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고용주가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BTEC(Business Training and education)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서 BTEC National Diploma, BTEC Higher national Diploma 자격을 준다.

Theory and Practice of Facial and Body Therapy(훼이스&바디 이론과 실기), Electrolysis(전기 분해법), Electrotherapy(전기 치료학), Manicure and Pedicure(매니큐어&페디큐어), Waxing(왁싱), Make-up(메이크업), Sports Massage(스포츠 마사지), IT and Data Handling, Exploring Complementary Therapies(대체의학), Related Studies : Anatomy, Physiology Diet and Nutrition(관련 과목 : 해부학, 생리학 다이어트와 영양학), Dermatology(피부과학), Microbiology(미생물학), Aromatherapy(아로마테라피), Indian Head Massage(인디안 헤드 마사지), Organizational Practices, Spa Therapies(스파 테라피), Scientific Principles for Beauty Therapy(뷰티테라피의 과학적 원리)

3) VTCT(VOCATIONAL TRAINING CHARITABLE TRUST)

VTCT는 1962년에 시작된 최초의 뷰티테라피부문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미용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협회로 국가자격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헤어드레싱, 고객서비스와 뷰티산업, Fitness, 스포츠와 Holistic Therapy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만 아니라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 /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SQA)에 의해 인증된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400여개의 칼리지와 Further Education (CFE's) 등의 자격증서비스 기관에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마사지, 아로마테라피와 반사학에 관한 자격증을 제공하는 최대의 기관이며, Reiki, 크리스탈테라피를 위한 자격증도 추가되었다.

처음으로 뷰티 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IHBC(International Health And Beauty Council), IIHHT(Inter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Holistic Therapies), IIST(International Institute of Sport therapy)의

모체가 되면서 또한 NVQ에 의해서 그 자격이 인증된 .국가 공인 자격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주로 공립학교인 경우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경우 이러한 자격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를 수여하고 있다.

4) IHBC(INTERNATIONAL HEAITH & BEAUTY COUNCIL)

IHBC협회는 NVQ에 상응하는 엄격한 정식 인정 과정을 통해서 VTCT에 의해서 수여되는 외부 자격제도이다.

- BEAUTY SPECIALIST DIPLOMA(뷰티 스페셜 리스트 디플로마)
- AROMATHERAPY IIHHT DIPLOMA(아로마테라피 디플로마)

5) IIHHT(INTER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HOLISTIC THERAPIES)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교육된다.

Maintaining employment standards(고용기준 유지)

Health, safety and security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의 건강, 안전, 안보)

Providing counselling to therapy clients(고객에게 상담해주기)

Assessing and advising the client for advanced aromatherapy
(고급과정 아로마테라피에 대한고객과 상담하기)

Preparing products and treatment plans (제품 준비하고 관리 계획 세우기)

Providing advanced aromatherapy treatment
(고급 아로마테라피 관리 준비하기)

Treatment objectives(문제점 관리하기)

Concepts of energy pathways, nervous systems responses and synergy
(에너지가 흐르고 신경계의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개념 정리)

Different forms of treatment (다양한 관리법)

Effects of oils (오일의 효과),

Skin tests (피부 테스트)

(2) 전문가 민간 협회 인증

미용산업 현장에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자격의 필요에 따라서 실무에 대한 자격 정도를 인정하는 민간 자격 제도이다. 실제 국가 자격보다 산업 현장에서는 보다 더 인정받고 있으며 보다 고급과정으로 인식되어 있다. 주로 사립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관련으로는 뷰티테라피, 아로마테라피 홀리스틱 테라피, 미용과 관련된 대체 요법 등에 관한 과목에 대한 인증이 민간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ITEC (INTERNATIOANL THERAPY EXAMINATION COUNCIL)

1947년에 W. E. Amond Taylor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치료를 위한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시술자가 서비스를 고객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는 독립적이고 ITEC 코스를 교육 할 수 있는 승인이 나면 학생들에게 이 코스를 가르칠 수 있다. ITEC에서 인정하는 각종 인증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BEAUTY THERAPY (뷰티 테라피)

Aestheticienne Diploma (Facial therapy) (에스테티션 디플로마)
Diploma in Physiatrics
ITEC Honours Diploma (ITEC 명예 디플로마)
Diploma in Beauty Therapy (뷰티테라피 디플로마)
Beauty Specialist Diploma (뷰티 스페셜 디플로마)
Diploma in Electrology (기기학 디플로마)
Diploma in Fashion, (패션 디플로마)
Theatre and Media Make-Up (연극& 미디어 디플로마)
Certificate in Make-Up (메이크업 써티피케이트)
Beauty Specialist Certificate (뷰티 스페셜 리스트 써티피케이트)
Certificate in Electrical Beauty Therapy (기기 뷰티테라피 써티피케이트)
Certificate in Waxing (왁싱 써티피케이트)

Certificate in Clinical Camouflage (흉터 보완 메이크 업)

Certificate in Manicure and Pedicure (매니큐어 &페디큐어 써티피케이트)

Certificate in Red Vein Treatment (정맥관리 써티피케이트)

② COMPLEMENTARY THERAPY (대체의학)

Diploma in Complementary Therapy

Diploma in Anatomy (해부학 디플로마)

Physiology and Massage (생리학과 마사지)

Diploma in Anatomy and Physiology Theory

Diploma in Aromatherapy

Diploma in Reflexology (반사학 디플로마)

Diploma in Nutrition and Diet Theory (영양학과 다이어트 이론 디플로마)

Diploma in Stress Management (스트레스 관리 디플로마)

Certificate in Indian Head Massage

Certificate in Lymphatic Drainage (림프 드레니쥐 써티피케이트)

2) CIBTAC (CONFEDERATION OF INTERNATIONAL BEAUTY THERAPY & COSMETOLOGY)

이 협회는 뷰티테라피와 홀리스틱테라피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시험 기관으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협회는 25년 이상의 명성을 쌓아오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과 엄격한 관리 방식으로 이름이 높다. 이 협회의 명성은 이런 학교들을 인증하고 전문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모든 학교들은 이 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기준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은 숙박이나 시설들, 기기, 제품, 교육의 수준 등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다. CIBTAC 디플로마 테라피스트들은 전 세계에서 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 디플로마를 인정하고 테라피스들이 안전하고 유능하며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사업에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4개 이상의 CIBTAC디플로마 코스는 직업적인 능력의 계발과 지식 학생들이 자심감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식의 습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디플로마 코스가 있다.

1. *Skin Treatments (피부관리)*
2. *Nail Treatments (네일관리)*
3. *Nail Technician (네일아트)*
4. *Waxing (왁싱)*
5. *Facial Electrical Treatments (얼굴 기기관리)*
6. *Media Make Up (방송 메이크업)*
7. *Aesthetic Treatments (에스테틱관리)*
8. *Advanced Aesthetic Treatments (고급 에스테틱)*
9. *Body Therapy (전신관리)*
10. *Advanced Body Therapy (고급전신관리)*
11. *Electrical Epilation (전기 탈모)*
12. *Blend Epilation (탈모)*
13. *Advanced Epilation (고급탈모)*
14. *Tweezer / Probe Free Epilation(탈모)*
15. *Anatomy & Physiology (해부생리학)*
16. *Body Massage (전신마사지)*
17. *Sports Massage (스포츠 마사지)*
19. *Sports Therapy (스포츠 테라피)*
20. *Stress Management (스트레스관리)*
21. *Aromatherapy (아로마테라피)*
22. *Reflexology (발 반사)*
23. *Infant Massage (베이비 마사지)*
24. *Reiki (레이키)*
25. *Holistic Therapies (홀리스틱 테라피)*

3) AOC (Aromatherapy Organization Council)

아로마테라피과정에 대한 국가적 표준의 부재로 인한 아로마테라피스트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주요 협회를 결성했다. 1991년 7개의 아로마테라피 협회가 모여서 AOC(Aromatherapy Organization Council)설립하였으며 지금은 산하에 13개의 다음과 같은 회원협회가 있다.

Aromatherapy & Allied Practitioners Association (AAPA)
Association of Holistic Practitioners International Ltd (AHPI)
Association of Medical Aromatherapist (AMA)
Association of Natural Medicine (ANM)
Association of Physical & Natural Therapies (APNT)
English Societe de lInstitute Pierre Franchomme (ESIPF)
Guild of Complementary Practitioners (GCP)
Holistic Aromatherapy Foundation (HA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romatherapists (IFPA)
International Therapy Examination Council ITEC Professionals
Renbardou Institute (RI)

그 중에서 IFPA는 IF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omatherapy), RQA(Register of Qualified Aromatherapy), ISPA(International Society Professional Aromatherpist)의 3개의 협회가 더 좋은 아로마테라피의 발전을 위해서 뭉친 협회이며 실제 현장에서 아로마테라피스트의 자격으로 높이 인정되고 있다. 인증(Accredited)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IFPA에서 인정하는 정 회원의 자격을 준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정회원 자격을 습득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제를 실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아로마테라피 스쿨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있다.

4) 기타

HABIA(Hairdressing And Beauty Industry Authority), I.P.T.I (Independent Professional Therapists International), IFHB(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 Beauty Therapist), ICHT(International Council of Holistic Therapist)는 대체요법, 보완요법과 건강관리, 뷰티테라피스들의 전문가 협회이며 다양한 미용관련 프로그램을 회원(Membership)제로 제공한다.

(3) 미용관련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

1) The Clare Maxsell-Hudson School of Massage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관련 저서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Clare Maxsell -Hudson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IIFPA와 ITEC 인증학교로 BMTC (British Massage Therapy Council) and BCMA (The British Complementary Medicine Association)와도 제휴되어 있는 학교이다. 교육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운영된다.

Diploma courses in Massage and Aromatherapy
Diploma course in Vodder Manual Lymph Drainage
Sports Massage ··· Face and Head Massage (ITEC)
Clinical Aromatherpy (IFPA 자격)
Postgraduate workshops and lectures (워크샵)

2) The London College of Massage

BMTC (British Massage Therapy Council) and BCMA (The British Complementary Medicine Association)와도 제휴되어 있는 학교이며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Thai Massage 타이마사지

Manual Lymphatic Dranage 림프마사지

3) The College of North East London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학교로서 우리나라 일반 전문대학의 형태와 유사하다. 뷰티테라피, 보완요법, 헤어드레싱 (Beauty Therapy, Comple-mentary Therapies and Hair Dressing)학과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OCN과정은 국가 개방 대학 네트워크 (National open college network)에 의한 열린 교육프로그램이다. HNC는 4,5등급에 해당하는 고급과정이다.

Beauty therapy OCN, 1년

Beauty therapy VTCT NVQ Level 2, 1년

Beauty therapy VTCT NVQ Level 2, 1년

Beauty therapy VTCT NVQ Level 3, 2년

Manicure and Pedicure VTCT, 22주

Aromatherapy, 22주

VTCT Body Massage diploma, 1년

VTCT Diploma in Indian Head Massage, 22주

VTCT diploma in Reflexology, 22주

Complementary Therapies, 1년

Complementary Therapies Higher National Certificate (HNC), 2년

Fashion and Photographic Make-up VTCT, 1년

Theatrical and Media Make-up Artist VTCT, 1년

Manicure and Pedicure VTCT, 22주

Hairdressing OCN Working Towards NVQ level 1, 1년

Hair Dressing city & Guides NVQ level 1(ESOL), 1년

4) The Charlton Institute of Beauty Therapy

뷰티과정, 네일, 탈모 등의 과정이 있으며 NVQ 수준에 맞추어서 VTCT에 의해서 수여되는 HBC와 IIHHT 자격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5) Fleur International College of Professional Aromatherapy의 IFPA인증 Diploma Course

IFPA인증 아로마테라피 교육기관으로 아로마테라피 4개의 모듈과 해부생리과정교육이 개설되고 있다. 이수후 시험을 거쳐 디플로마 취득과 동시에 IFP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6) Bluebird Holistic Healing

써리 & 지역의 개방 학교 네트워크에 의해서 인증 받은 홀리스틱 스피리크 컬러 힐링코스는 국가 개방 대학 네트워크(National Open College Network)에 속해있는 학교 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2가지 레벨을 제공하고 있는데 OCN 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이 코스를 들을 수 있다. 레벨 2코스는 GCSE의 수준과 비슷하고 레벨 3코스는 A레벨과 비슷한 수준을 요구한다. 학점은 OCN에 의해서 인정받은 점수와 이전에 받은 점수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한다. 이 프로그램은 2가지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컬러 힐링'의 기본과정(실무자 수준의 레벨 3코스에서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과 '컬러 힐링 디플로마'과정이다.

이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공부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을 해준다. 디플로마 코스는 정신적인 치료, 컬러 테라피, 상담 기법, 컬러 상담, 컬러를 이용한 진단, 해부 생리학, 실습과 간단한 부기들을 공부해야하고 실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과 FULL TREATMENT, 이 실습과정은 개방학교 시험관에 의해서 채점된다. 패스한 학생은 60시간의 케이스 스터디를 끝내야하고 교수의 개인 지도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그들은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 서면 상으로 기록해야하고 OCN 시험관에 의해서 채점된다. 또한 내부적인 감독감에 의해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제 5 장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미용사면허제도는, 미용업을 여러 공중위생영업중의 하나에 포함시켜 공중위생관리법에 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문제가 된다. 미용업은 명백하게도 공중위생관리법상에 규정된 다른 공중위생영업과는 달리 '미용사면허제도'를 두고 있는 영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불합리한 법구조속에 미용사면허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제도의 틀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의 미용사면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면허권자가 면허를 부여할만한 적합한 권한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 미용사면허의 종목이 '미용사'라고 하는 현행의 단일 종목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미용사면허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시험 면허제도가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느냐의 문제, 아울러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에 또 다시 면허를 받도록 하는 이중적인 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가다듬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된 '미용사법'의 제정의 당위성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방안에 관해서 일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퍽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자료들과 공청회 자료, 국회의 입법발의서와 검토보고서 등의 입법자료들, 외국의 면허제도와 관련한 입법들, 기타 면허와 관련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미용사면허권자에 관한 문제

면허권자란 면허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행정청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상 미용사면허는 시·도지사가 면허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면허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법상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로서, 면허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면허권자를 달리한다. 예컨대, 보건 및 의료와 관련한 업무, 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의 의료인과 약사·한약사, 그리고 의료기사, 위생사, 영양사 등에 관한 면허는 보건 및 의료의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권자인 것이며, 축산과 관련이 있는 수의사는 농림부장관이 면허권자이다.

미용업무는 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사면허와 함께 시·도지사가 면허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61년의 '이용사및미용사법' 제정 당시부터 유래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시·도지사가 면허권자로서의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시·도지사가 미용사면허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단지 면허만을 부여하고 면허와 관련된 업무만을 관장할 뿐, 미용사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임에도 면허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낭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서 미용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행 행정실무에서처럼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업무로 면허를 발급하면 된다.[83]

한편, 미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행정청이 '시장·군수·구청장'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용사면허의 면허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

---

83) 이한웅, 전게자료, pp.11-12.

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조리사면허권자'를 당초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미용사면허권자로 규정된 현행 법률의 불합리성은 긍정되지만, 과연 그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입법자의 자유에 속하는 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용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권자가 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미용의 업무가 공중보건에 중대한 관련을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의 업무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표5-1> 의료·보건관련 면허의 면허권자에 따른 분류

유 형	보건복지부장관면허	시·도지사면허	시장·군수·구청장면허
해당면허	· 의료법상의 면허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약사법상의 면허 - 약사, 한약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상의 면허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위생사등에관한법률상의 면허 -위생사 · 식품위생법상의 면허 - 영양사	· **미용사** · 이용사	· 조리사

셋째로, 표<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종의 보건관련 면허 중 17종의 면허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보건관련 업무의 총괄 관

할 행정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미용사면허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미용사 면허종목에 관한 문제

현행 미용사면허제도는 그 종목으로 '미용사'만을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부미용사면허'의 신설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84] 특히 이와 같은 논의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피부미용'이 포함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피부미용사'가 '미용사'로부터 독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부미용사'의 종목이 창설되는 것인지의 여부로까지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 '피부미용사면허'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어서 '피부미용사면허'가 '미용사면허'로부터의 독립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피부미용사면허'의 필요성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에는 '미용사'

84) 피부미용사제도의 독립과 관련하여 게재된 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이한웅, "'피부', 미용사 독점적 업무영역될 수 없어", 피부미용신문 2003.1.1자, p.5 ; 이한웅, "행복추구권과 피부미용사 면허제도", New Esthetics 2002년/56호,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 이한웅, "미용사 업무범위 구분 바람직", 미용정보신문 제278호(2003.1.15자), p.22 ; 김봉인, "피부미용사 자격 면허제도 신설 시급", 미용정보신문 제277호 ; 한영숙,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한 계단씩 다가가자", 피부미용신문 ; 김기연, "피부미용 자격증에 대해", New Esthetics 2002년/55호,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 김춘자, "미용사, 면허제도 개선 시급하다", 미용정보신문 제279호(2003.2.1자), p.12 ; 조수경, 권두언, New Esthetics 2002년/55호, p.14 ; 조은자, "피부미용인 여러분! 바로 알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피부미용신문 2003.2.1자 ; 이순혜, "피부관리사 자격증 제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피부미용신문 제5호(2003.3.1자), p.4 ; 박영례, "피부미용인 여러분 하나로 뭉칩시다", 피부미용신문 제5호(2003.3.1자)

의 업무범위를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헤어미용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 매니큐어, 메이크업 등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 규정 하에서는 피부미용의 업무나 메이크업 또는 매니큐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용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부미용사면허'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피부미용은 사람의 피부건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85]

둘째, 현행 '미용사면허제도'는 머리미용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미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굳이 취득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야라는 점에서, '피부미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면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86]

셋째, 모든 직업이 전문화, 세분화하면서 더 세밀하게 직종의 영역이 나눠지는 추세이며, 미용분야도 머리를 손질하는 머리미용분야, 피부를 관리하는 피부미용분야, 외모를 아름답게 채색하는 메이크업 분야 등 확연하게 드러나는 영역의 특성이 있어서 각각의 영역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87]

넷째, 70여 개가 넘는 전문대학에 피부관리 전문인이 배출되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시데스코(CIDESCO)라고 하는 국제 피부관리사 자격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제도권내에서 국가적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

85) 한영숙,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한 계단 씩 다가가자", 피부미용신문 제7호(2003.4.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p.4.

86) 조은자, "피부미용인 여러분! 바로 알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피부미용신문 제3호(2003.2.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p.4.

87) 김기연, "피부미용 자격증에 대해", New Esthetics 2002/55호, 서울 :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2002, p.19.

있다는 점이다.[88]

다섯째, 피부미용교육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수준이 교육기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목표도 정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나 권위 있는 단체가 인증한 면허제도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89]

여섯째, 현행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지 60문항 중 피부미용분야는 단지 5문항에 불과하여 머리미용중심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피부미용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90]

일곱째, 피부미용에 관한 자격 신설 여부가 정부차원에서 정리되지 않아 국가공인자격을 사칭하는 민간자격이 범람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시장질서 문란 등 공정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91]

여덟째, 피부미용은 머리미용과 직무이행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야의 직무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미용사면허제도로는 피부미용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92]

아홉째, 피부미용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성상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위생상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피부미용사'를 면허대상의 직업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 있다는 점이다.[93]

---

88) 김봉인, "피부미용사 자격 면허제도 신설 시급", 미용정보신문 제277호(2003.1.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89) 김춘자, "미용사, 면허제도 개선 시급하다", 미용정보신문 제279호(2003.2.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p.12.

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중위생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공청회 자료 2002-04),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p.15.

91) 상게자료, p.15.

92) 상게자료, p.16.

93) 이한웅, "미용사 업무 범위구분 바람직", 미용정보신문 제278호(2003.1.15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p.22. ; 이한웅, "'피부', 미용사 독점적 업무영역될 수 없어", 피부미용신문 창간호(2003.1.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p.5.

열째, 정부도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94] 노동부는 2000년 7월 24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0년 말에 '피부미용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직종 개발 차원에서 '피부미용관리사'라는 직종을 신설할 것을 계획했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종목신설이 유보된 상태다.[95]

한편, 미국 California주의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의 규정에서는 미용사면허를 미용사(美容師 ; Cosmetologist), 피부미용사(皮膚美容師 ; Esthetician), 미조술사(美爪術師 ; Manicurist), 그리고 제모술사(除毛術師 ; Electrologist)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96]

최근 한국에서는 미용사에서 피부미용사 뿐만 아니라 분장사(또는 메이크업 전문가), 발관리사 등의 자격을 분리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97]

Ⅱ. '피부미용사면허제도' 방법론

'피부미용사면허제도'의 도입은 현행의 '미용사면허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중위생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2002년 2월 28일에 주최한 공청회의 자료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98]을 중심으로 그 도입의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

94) 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에 대한 시험접수·시험문제를 2001.1월부터 공개", 보도참고자료, 2000.7.24자.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자료, p.17.

96)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Article 3. Qualifications for Examination.*

97) 미용정보신문, 제279호(2003.2.1자) 기사, p.2 ; 동 신문, 제280호(2003.2.15자) 기사, p.13. 등 참조.

98) 3가지 방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자료, p.22.'에 수록된 방안을 의미한다.

1. '통합 미용사면허제'안

제1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현행 제도 유지'로서 '통합 미용사면허제도안'이다. 미용의 모든 분야, 즉 머리, 피부, 메이크업 등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미용업'으로 통합하여 단일 관리하자는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청회는 우리 산업이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수준의 선진국화 및 사회·노동시장의 환경변화, 사회 전 분야의 전문화 추구, WTO 출범에 따른 국내외 궁중위생업의 환경변화라는 점에 관점을 두고 연구하여 준비된 공청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각의 기초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구결과를 공허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미용사면허제도'는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1안은 무의미한 견해인 것이다.

2. '복수자격 · 단일면허제'안

제2안으로 면허는 '미용사면허'로 단일면허로 하되, 국가기술자격을 분리하여 '미용사자격'과 '피부미용사자격'으로 분리하자는 안이다.[99]

즉, 현재의 통합된 미용분야에서 피부미용분야를 독립시켜 자격을 분리하되, 단, 면허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용사면허'하에서 전문 과목을 두는 종목 세분화를 실시하는 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안이 조사결과와 외국의 현황에 의해 가장 시의성 있는 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99)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는 제2안을 지지했었으나 2002년 12월 1일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피부미용사 자격 및 면허제도 신설에 대한 공동합의서'를 통해 제3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한다[피부미용신문 창간호(2003.1.1자) 제1면 기사].

제2안은 국가기술자격을 '헤어미용'과 '피부미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이 두 자격 어느 것을 취득하더라도 면허는 '미용사면허'로 하자는 방안이다. 혹자는 제2안을 마치 의사면허처럼, 의사면허 아래에 전문분야를 따로 두는 제도를 원용하고 있다. 즉, 면허는 '미용사면허'로 하고, 이를 '헤어미용전문', '피부미용전문' 등으로 구분하자는 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내용상으로는 명백하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전제되어 있다.

제2안의 문제점에 관해 몇 가지 사항 몇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로 제2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면허요건 중 무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런 논의는 생략되어 있다. 즉, '헤어미용전문'인지, 아니면 '피부미용전문'인지의 여부는 어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느냐에 의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그 전문분야 선정의 문제가 남게 된다.

둘째로, 면허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틀만 만들 경우, 향후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면허'의 경우처럼 '미용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한 수습과정을 거쳐서 전문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전문자격별로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면허요건을 면허시험으로 할 경우 그 시험 과목의 선정에 있어서 미용공통과목은 무엇으로 하고, 각각의 전문과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로 이 안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의 예를 들고 있는데, 미국 California주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명백하게 면허가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도 외국의 대체적인 사례인 양 언급한 부분은 그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3. '복수자격 · 복수면허제'안

제3안은 '피부미용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분리'하여 자격과 면허를 모두 나누자는 안이다.

현재의 통합된 미용분야에서 피부미용분야를 독립시켜 자격과 면허를 모두 분리하며, 미용업을 '미용사면허'와 '피부미용사면허'의 두 종류로 분리하여 관리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방안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제2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의 제도처럼 면허요건에 무시험면허가 존속될 경우 이들에게 어떤 면허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의 전문대학의 학과명칭과 커리큘럼이 '피부미용'과 '헤어미용'으로 확연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자격과 면허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상세한 논의는 후술하도록 한다.

'피부미용사면허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론은 '피부미용사제도' 도입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방안으로, '미용사면허'와 '피부미용사면허'를 각각 독립시키되, 그 면허요건으로 일정한 학업성과가 있는 자가 면허시험을 합격한 후 면허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피부미용사면허'의 독자성

'피부미용사면허제도'의 도입이 기존 '미용사면허'로부터의 독립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새로운 영역의 창설인가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분리·독립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현행 제도상 피부미용업무가 미용사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상

의 '미용업'에 대한 정의 규정은 이러한 주장을 든든하게 지지해 준다. 즉, 현행법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손님의 피부를 미용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면허'는 '미용사면허에서' 분리·독립한다는 견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타당성여부를 가리기 우해서는 현행법상의 이 규정이 현재 영위되고 있는 '피부미용영업'의 행태와 일치하는가의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있다. 피부미용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피부전신마사지는 불가능함"이라고 하고 있으며,[100]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의 피부라 함은 외모의 피부 즉 통상 옷을 입었을 때 밖으로 나타나는 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부미용은 얼굴미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101] 이러한 해석에 기초할 때 현행법상 미용업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피부'는 단지 얼굴만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의 피부미용이 전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과 견주어 볼 때, 피부미용업의 영업의 범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피부미용영업'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미용업'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독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손님의 피부'가 미용사의 독점적 영업대상으로 규정한 것인가의 문제를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인간의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미용사 외에도 여러 직업들이 있다. 미용관련 영업 중에 메이크업, 네일아트, 발관리 등이 있으며,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 무수히 많은 직업이 인간의 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손님의 피부'를 업무의 영역으로 한 이 규정은 미용사의 업무영역을 규제하는 규정일 뿐, '피부'를 미용업의 영업 대상에 독점적으로 인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새겨야 옳은

100) 행정해석 공중31112-124(1992.4.30).
101) 이호용, 미용인을 위한 위생법규해설, 서울 : 비전캐릭터, 1999, p.54.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의 피부미용업소 또는 피부관리업소의 영업이 반드시 미용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성격의 업무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보다는 이는 자유업에 속하는 영업분야이기 때문에 '피부미용사제도'의 설치는 새로운 면허 또는 자격의 창설로 보아야 한다.[102]

한편, '피부미용영업'의 영위를 의료법위반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5조)고 규정하여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부미용사의 업무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술로 병을 고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즉,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되 의술을 사용하는 행위가 바로 의료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피부성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미용사의 업무영역은 결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피부미용사라고 하는 직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지도 않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피부미용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대상의 업무로 제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103]

---

102) 이한웅, "'피부', 미용사 독점적 업무영역 될 수 없어", 피부미용신문 창간호 (2003.1.1자), p.5.

103) 이한웅, 전게기고문, p.5.

제 3 절 미용사 면허요건에 관한 문제

현행법은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중의 하나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합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이원적 체계의 불합리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자격체계의 정비에 관해 대체적으로 3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면허제도를 버리고 자격제도만을 취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현행의 이원적 자격체계를 수정하여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제도를 버리고 면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래에서 이들에 관한 각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지 강구하고자 한다.

Ⅰ. '자격제도' 일원화안

국가기술자격제도와 면허제도는 그 성질이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어느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해당 분야 업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부합한 결정을 하는 입법정책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제도로 일원화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104] 이를 위해서 현재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건강진단서를 통해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미용사면허증을 직접 발급하거나, 면허와 국가기술자격간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차원에서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104) 신용철, 전게논문, p.94.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도' 일원화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면허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모름지기 면허는 그 성질상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지, 비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위탁에 의해 행할 수도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의료인 면허의 경우도 면허시험을 위탁에 의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지만, 면허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험시행기관에 부여된 권한은 시험의 관리일 뿐, 면허의 발급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발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105]

둘째, 미용사의 경우 그 면허제도를 폐지했을 때의 실익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이원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면허는 그 성질이 금지를 해제하여 업무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인 반면에, 자격의 경우는 경찰금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자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얻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미용업의 업무는 그 성격상 경찰금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용사제도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성격을 지닌 면허제도가 실익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격체계를 여하히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현행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능사'와 '기능장'의 체계만 두고 있다. 한편, 산업기사의

---

105) 의료법 제4조제4항.

응시자격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사 수준인 미용사자격에는 산업기사자격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토록 모순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체계를 바로 세운다 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경찰금지업에 해당하는 미용업무의 속성상 자격제도로의 일원화는 인정할 수 없는 방안이다.

Ⅱ. 수정 이원적 자격체계안

이는 현행 제도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면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미용사 분야의 등급체계를 수정하자는 방안이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지만, 면허요건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체계를 수정하자는 방안인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산업기사' 등급의 경우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

을 인정받은 자" 등 다양하게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사 응시자격의 다양성으로 인해 예컨대 미용기능사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년의 실무경력만을 쌓은 후에 산업기사시험을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기사는 기본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방안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단계인 미용사시험 또는 미용산업기사시험에의 합격을 면허요건으로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야만 면허를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미용기능사가 되었든 미용산업기사가 되었든 일단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모두에게 미용사면허를 부여하는 방법과, 둘째로 면허요건을 강화하여 미용산업기사에 합격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미용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미용업에 보조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의 방법은 기능사자격과 산업기사자격에 대하여 구분 없이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다른 단계의 자격을 동등한 가치로 평가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둘째의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기사만이 미용업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일반적인 국가기술자격시험 체계상에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간의 실무경력 이후에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와, 실무에 있어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일정기간 스탭으로 일해야만 독립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 후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독립적으로 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체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산업기사제도를 신설하고, 산업기사에게만 신규의 면허를 부여하는 체계로 정비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106]

한편, 이 방법에 대한 문제로는 자격제도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미용업의 업무 또는 영업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게 되는 이원관리체계의 불합리성이 극복되지 못한다는 점과, 산업기사자격의 응시자격으로 2년의 실무경력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경력 2년만으로 산업기사가 되고, 그로 인해 면허를 취득하여 미용업의 개설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모순점이 발견된다.

Ⅲ. 면허제도 일원화안

이는 기존의 면허요건중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삭제하여 이중적 구조의 자격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무시험으로 면허가 부여되는 요건도 삭제하여 면허시험을 통한 미용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이라는 사실을 다른 방안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자격제도로 일원화하자는 주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미용업에 대해 면허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취지와 업무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적어도 미용업에 관한한 면허제도는 포기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미용업은 그

106)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용사 자격증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간에 따라 '산업기사', '기사' 등을 신설하여 자격증간 상대적 차별화로 미용학의 발전을 유도"하고, 연구결과 이러한 안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게자료 p.23].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면허제도를 간과한 논리비약으로 평가된다. 즉, 고교졸업 이하의 학력의 경우는 '기능사', 전문대학 졸업학력은 '산업기사', 4년제 대학졸업 학력은 '기사'로 구분하자는 주장만 있을 뿐, 어느 단계에서 면허를 부여할 것인지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이다.

특성상 일반적으로 금지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현행법은 '이용사및 미용사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고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질을 지닌 면허제도로 미용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체계는 미용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아울러서 세계의 주요국들도 모두 면허제를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미용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체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미용사면허제도로 일원화하는 이 방법도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미용장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득권층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즉 더 이상의 미용장이 배출되지 않게 되는 탓에 자연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럴 경우 기왕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용'이 그 출발은 기술로 시작하지만 예술이라는 차원으로 승화 발전된다는 점과, 예술은 특정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용장제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07]

Ⅳ. 무시험 면허제도의 폐지 문제

이상의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에는 현행의 무시험 면허부여제도의 폐지가 전제되어 있다. 무시험 면허부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형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으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로 학업성과의 가치와 관련한 문제다. 현행법은 4년제 대학교 미용

107) 이한웅, 전게자료, p.14.

학과를 졸업한 자와 2년제 전문대학 미용학과를 졸업한 자, 3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1년제 고등기술학교[108]를 졸업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 학업성과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 학교간의 학업성과의 가치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평가가 배제되어 있다. 즉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게 되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반면에, 3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단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지위만을 확보할 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때 얻게 되는 학문적 가치를 보유하지는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고등기술학교의 경우는 비록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사설학원과 고등기술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이다. 통상 미용학원들이 6개월 과정을 표준으로 삼았으나 최근 학점은행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사설학원은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교육내용이나 수준이 결코 고등기술학교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법의 규정에 의해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곧바로 미용사면허가 부여되는 반면 학원과정을 이수한 자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만 면허를 받게 되는 것도 모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교육기관간의 학업성과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동등하게 무시험 면허 요건에 포함하고 있는 점이 문제인

---

108) 고등기술학교란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4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용관련 고등기술학교에는 정화고등기술학교, 민혜고등기술학교, 경기고등기술학교, 금호고등기술학교, 무궁화고등기술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 중앙고등기술학교, 인천고등기술학교, 부산미용고등기술학교가 있다.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이 발견된다.

둘째로 다른 면허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료기사·한약사·약사·위생사·영양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다른 모든 면허가 관련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를 부여하는 조리사의 경우에도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미용사면허제도는 다른 면허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109] 이렇듯 미용을 배웠다는 사실만으로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여 미용사면허를 부여하는 미용사면허제도는 능력기반평가(competency-based assessment)[110]를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 더러,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면허시스템을 채택하는 이유는 해당분야가 국민의 생명, 건강, 질서, 안정 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직의 제한수준을 높이는 것인데도, 단지 특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였다 하여 그 이수의 결과를 평가하지도 아니한 채 포괄적인 개념의 미용사면허를 무시험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단초가 되고 있다.[111]

한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1999년 2월 8일 개정법률을 통해 종전에는 인력확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미용사의 경우도 무시험면허제도를 도입한 1961년도의 상황과 그로부터 한 세대인 32년이 지난 21세기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조속히 폐지하고 국가시험으로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109) 이한웅, 전게자료, p.15.

110)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과 지식에 비중을 두는 평가방법으로서 교육·훈련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를 중요시 측정하는 방법이며 직업능력을 자격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1) 신용철, 전게논문, p.86.

제 4 절 미용사 면허시험에 관한 문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체계를 면허제도로 일원화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면허시험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그리고 응시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이다.

Ⅰ. 미용사면허시험 시행방법의 문제

현행의 보건 및 의료관련 면허시험은 국가시험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의료법의 경우에는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시험 관리를 수탁한 관계전문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다.

미용사시험은 초기에는 시·도에서 시행하다가, 198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으로 개정되면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용사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시험은 면허권자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시험의 시행자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법의 규정에 따라 이 시험의 관리를 일정한 시험관리 능력을 지닌 관리기관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미용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의 문제

미용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문제는, 일정한 미용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미용사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반대론은 전혀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하겠다.

대체적으로 반대론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면허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다른 반대론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면허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따라서 선진 주요국의 예와 같이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실이 면허요건이 아닌 면허시험 응시요건으로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표5-2> 일본 미용사양성시설의 교과목과 표준수업시간수

과 목		표준수업시간수
필수과목	관계법규·제도	30
	위생관리	90
	미용보건	120
	미용의 물리·화학	90
	미용문화론	90
	미용기술이론	120
	미용운영관리	60
	미용실습	800
소 계		1,400
선택필수과목		600
합 계		2,000

자료 : 일본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별표 제1].

일본의 경우는 미용사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으로 미용사양성시설에서 2,00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목과 시간수는 <표5-2>와 같다.

미국 California주에서의 미용사(Cosmetologist) 시험은 나이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0학년 이상을 마쳤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주 정부 관계국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미용과정 1,6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112] 미용학교의 필수과목은 모두 17과목으로 그 내용은 <표5-3>과 같다.

112) 미용사외의 다른 면허의 경우는 필수이수 시간이 각각 다르다. : 피부관리과정(Skin Care Course)은 600시간, 네일케어과정(Nail Care Course)은 350시간, 제모술사과정(ElectrolysisCourse) 600시간 등이다.

<표5-3> Curriculum for Cosmetology Course in California State.

교 과 목	이론시간	실기시간
법규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and the Board's Rules and Regulations)	20	
미용화학 (Cosmetology Chemistry)	20	
건강과 안전/위험한 물질 (Health and Safety/Hazardous Substances)	20	
미용전기이론 (Theory of Electricity in Cosmetology)	5	
소독 및 공중위생 (Disinfection and sanitation)	20	10
세균학 · 해부학 · 생리학 (Bacteriology, anatomy and physiology)	15	
젖은 헤어스타일링 (Wet Hair Styling, shampooing, fingerwaving, pin curling and comb-outs)	25	200
뜨거운 헤어스타일링 (Thermal Hair Styling)		
Thermal styling	20	40
Press and curl		20
퍼머넨트 웨이빙 (Permanent Waving)	20	80
화학적 스트레이트닝 (Chemical Straightening)	20	25
헤어 커팅 (Hair Cutting)	20	80
헤어컬러링 및 블리칭 (Haircoloring and Bleaching)		
Haircoloring	40	50
Bleaching		20
두피 및 모발관리 (Scalp and Hair Treatment)	5	20
미안술 (Facials ; Manual, Electrical, Chemicals)		
Manual	5	10
Electrical	10	15
Chemicals	10	15
눈썹 그리기 및 모발제거 (Eyebrow Arching and Hair Removal)	10	20
메이크업 (Makeup)	15	10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Manicuring and Pedicuring)		
Water and oil manicure	5	15
Complete pedicure	5	10
Artificial nails		
Acrylic	10	50
Artificial nail tips	10	50
Nail wraps and repairs	5	20

자료 :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6, Division 9) Article 6. §950.2

Ⅲ. 미용사면허시험 시험과목의 문제

한국의 현행 미용사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미용이론 25문항, 공중보건학 10문항, 소독학 10문항, 피부학 5문항, 공중위생법규 10문항 등 5과목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기시험은 2시간 20분간의 작업형으로 하며, 커트, 퍼머, 세팅, 화장 등 미용작업의 숙련도와 정확성을 평가한다.

시험의 과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필기시험으로 "관계법규·제도, 위생관리, 미용보건, 미용의 물리·화학, 미용이론" 등 5과목이 있으며, 실기시험은 '미용실기'가 있다.

미국 미용사면허시험을 위한 교재의 과목들도 한국의 미용사면허시험 과목을 설정하는 데에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Pivot Point의 Salon Fundamentals, A Resource for Your Cosmetology Career'라는 교재를 구성하고 있는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nit 1 이론요약(Theory Essentials)

1. 직업의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 건강한 몸과 마음(A Healthy Body and Mind),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Effective Communica- tion), 인간관계(Human Relations)
2. 미용실 생태학(Salon Ecology) : 미생물학(Microbiology), 전염병관리(Infection Control), 응급조치(First Aid)
3. 해부학 및 생리학(Anatomy and Physiology) : 인체의 구성요소(Building Blocks of the Human Body), 기본인체조직(Basic Body Systems)
4. 전기학(Electricity) : 전기원리(Principles of Electricity), 미용에서의 전기학(Electricity in Cosmetology)
5. 화학(Chemistry) : 물질(Matter), 수소이온농도 등급(The pH Scale), 미용화학(Chemistry of Cosmetics)
6. 미용실 영업(Salon Business) : 미용산업(The Beauty Industry), 직업탐구(Job Search), 직업관계(Professional Relationships), 미용실 소유권(Salon Ownership), 미용실 소매(Salon Retailing)

Unit 2 모발 서비스(Hair Services)

7. 모발학(Trichology) : 모발이론(Hair Theory), 모발관리(Hair Care), 주름잡기(Draping), 샴푸잉과 두피 맛사지(Shampooing and Scalp Mass- age)
8. 디자인 결정(Design Decisions) : 디자인 결정의 고려사항들(Design Decision Considerations), 고객상담(Client Consultation), 디자인의 구성(Design Composition)
9. 헤어커팅(Haircutting) : 헤어커팅 이론(Haircutting Theory), 헤어커팅 절차(Haircutting Procedures)
10. 헤어스타일링(Hairstyling) : 헤어스타일링 이론(Hairstyling Theory) 열을 이용하는 스타일링(Thermal Styling), 젖은 스타일링(Wet Styling : Fingerwaves, Pincurls, Skip Waves, Rollers), 긴머리 스타일링(Long-hair Styling)
11. 위그와 두발첨가물(Wigs and Hair Additions) : 위그와 헤어피스(Wigs and Hairpieces), 두발첨가물(Hair Additions)
12. 화학적 기법(Chemical Texturizing) : 파마하기(Perming), 화학적 완화(Chemical Relaxing), 컬의 재구성(Curl Reforming)
13. 헤어컬러링(Hair coloring) : 색채이론(Color Theory), 현재의 머리칼라 확인하기(Identifying Existing Hair Color), 현재의 머리칼라 바꾸기(Changing Existing Hair Color)

Unit 3 네일 및 피부 서비스(Nail and Skin Services)

14. 네일 학습(The Study of Nails) : 네일이론(Nail Theory), 자연스런 손톱 관리(Natural Nail Care), 인조손톱 관리(Artificial Nail Care)
15. 피부 학습(The Study of Skin) : 피부이론(Skin Theory), 피부관리(Skin Care), 제모술(Hair Removal), 메이크업(Makeup)

한국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기과목중 핑거웨이브(Finger Wave)는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7.1%의 지지를 받았으며, 신부화장이 70.0%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113] 반면에 새로이 신설해야 할 과목으로는 Blow Drying과 염색, 업스타일 등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용사면허시험을 도입할 경우 그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과목선정을 위한 기준을 아래

113) 이주영 외, "한국미용사자격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7권1호, 서울 : 한국미용학회, 2001.6, p.25.

와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첫째, 필기시험의 문항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으로는 60문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면허시험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 문항수는 대폭 늘려야 한다. 즉, 미용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60문항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영양사 국가시험은 9과목에 3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 등의 국가시험은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는 500문항, 한의사는 400문항, 치과의사는 364문항, 간호사는 330문항, 조산사는 200문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용사 면허시험의 경우 그 문항 수는 적어도 200문항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필기시험 과목은 '미용기술에 관한 이론', '미용과 관련한 기초과학이론(물리·화학·전기학·해부학·생리학 등)', '위생 및 소독에 관한 이론', '미용보건', '미용의 역사 및 미용문화', '미용실 운영관리에 관한 이론', '관계법규 및 제도' 등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실기시험 과목의 설정은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기본이 되는 기술에 해당하는 커트, 퍼머넨트 웨이브, 세팅 롤, 핑거웨이브, 핀컬, 메이크업 등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응용기술에 해당하는 헤어 컬러링 및 블리칭, 블로우 드라이, 업스타일 등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실기시험의 채점은 작품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도 중요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적정한 위생적인 조치를 취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것도 채점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절 독립된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

독립된 미용사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986년 '이용사및미용사법'이 폐지된 이래 미용인 모두의 숙원이 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2000년 9월 7일 국회 조성준 의원 대표발의로 '미용사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용은 개인의 개성과 미를 표현하는 창작 예술적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의 기초인 동시에 최종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미용이 관련산업의 기초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미용사의 업무에 모발관리, 얼굴관리, 손발관리 뿐만 아니라, 피부관리를 포함시킴(안 제3조).

나. 일정한 학력이상의 자 또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미용사 면허를 부여하고 따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피부미용전문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미용실 영업에 관해서는 신고제를 함(안 제8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감시원을 두고 미용감시원으로 하여금 미용실개설자의 법령준수를 감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미용실 개설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실 개설자에 대하여 면허취소·정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및 미용실의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19조).

바. 전국적인 미용사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하여 미용감시업무와 보수교육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 내지 26조).

사. 무면허업자, 업무정지 기간중의 업무수행자, 영업정지 기간중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아. 신고 의무를 해태한 미용사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8조).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법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미용사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미용업만을 분리하여 단독법을 제정하는 문제,[114]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문제,[115] 신고제 등의 규제신설 문제[116]"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행정의 편의에 천착하여 미용업 및 미용사제도를 보호해야 하는 가치를 몰각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미용사법' 제정에 장애가 되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과연 독립된 미용사법 제정의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독립된 미용사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법인 것이다.

첫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공중위생영업중 면허를 요건

---

114) 이에 관하여 검토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동일·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된 하나의 법체계속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이해하기에 편리하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관련영업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업만을 분리하여 동법안과 같이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거의 개별법 형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법체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편의'만을 기하겠다는 취지일 뿐, 미용업 및 미용사의 보호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질을 외면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115) 법안에서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현행의 규정에다가 '신체부위의 털관리, 손·발 마사지, 전신피부미용' 등의 피부관리를 추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추가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사 및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피부관리사의 단독자격증 신설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련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합의를 도출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서 '대한이용사회장' 및 '대한미용사회 피부미용분과위원장'이 이 법안을 철회 또는 부결해달라는 진정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16)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는 "새로이 신설하려는 (신고제 등의) 규제관련 규정은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가급적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맡겨 민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미 폐지 또는 조정된 내용으로 다시 법제화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으로 하는 영업이 미용업과 이용업 뿐이라는 차원에서 미용업이 비록 공중의 위생과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중위생영업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영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용업 및 미용사에 관한 법률은 단지 영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인 이른바 자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미용업의 시장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용사의 면허 발급 실적도 계속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1년도의 통계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위생영업 198,763개 업소 중 미용업소가 84,786개로 전체의 42.65%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공중위생영업의 절대부분에 해당한다.

<표5-4> 공중위생영업소수

구분	계	**미용**	이용	숙박	목욕장	세탁	위생관리용역
2001	198,763	**84,786**	32,135	32,122	10,098	34,725	4,897
2000	197,142	**83,780**	32,237	32,144	9,950	35,034	3,997
1995	176,919	**71,613**	30,441	30,764	9,453	32,890	1,758
1990	150,446	**58,376**	29,283	31,946	8,266	22,178	397
1985	99,522	**42,081**	28,298	25,336	3,807	-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표5-5> 미용사기능사 자격취득 통계

년도	필기응시자	합격(취득)자	여자합격자	합격(취득)율	자격취득자누계
2001	98,663	18,442	16,526	18.6 %	**308,704**
2000	102,727	20,450	18,338	19.9 %	290,262
1999	174,496	28,799	25,554	16.5 %	269,812
1998	143,730	22,530	20,223	15.6 %	241,013
1997	95,983	23,114	21,024	24.0 %	218,483
1996	89,216	19,258	17,644	21.5 %	195,369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수도 <표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현재 308,704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고, 미용장기능장도 <표5-6>과 같이 136명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미용사인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미용업과 미용사를 보호하는 법의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된다 할 수 있다.

<표5-6> 미용장기능장 자격취득 통계

년도	필기응시자	합격(취득)자	여자합격자	합격(취득)율	자격취득자누계
2001	710	29	27	4.0 %	**136**
2000	457	45	42	9.8 %	107
1999	224	32	30	14.2 %	62
1998	136	13	13	9.5 %	30
1997	96	3	3	3.1 %	17
1996	60	3	3	5.0 %	14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넷째, 피부미용사면허제도 신설과 관련한 입법의 정비를 독립된 미용사법의 제정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부미용사면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이 분야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부미용사면허제도를 미용사면허제도와 조정하여 합리적인 방향의 모색은 독립된 미용사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한국의 미용사면허제도를 바르게 정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그 개선 방안에 관해 몇 가지 사항을 강구해 보았다. 다른 무엇보다도 누더기처럼 변질되어 온 현행 미용사면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의'와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볼 때, 현행법만 고수하려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인지를 가려서 그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결론으로 한국 미용사면허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미용사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미용사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미용사업무와의 밀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용사에 관한 제도와 미용업의 영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면허권자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면허체계를 정비해서 면허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일원화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의 면허요건은 일정한 학업과정을 이수한 자들과 미용사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다시 면허를 부여해야 하는 이중적인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정비하여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면허요건에서 삭제하고 미용사면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셋째로 무시험 면허부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기술학교에

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수준의 학업성과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면허제도와의 형평성에서 현저한 불공정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넷째로 미용사면허시험은 국가시험으로서 미용사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험관리업무는 의료인등의 면허제도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미용사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 중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거 응시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미용사면허 시험제도는 한결같이 일정한 기간의 미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응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용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만이 미용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피부미용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미용사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피부미용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부미용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업계의 실상을 살펴보더라도 반드시 피부미용사를 독립하여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 독립된 미용사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용사제도와 미용업의 영업에 관한 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크게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미용사면허제도와 미용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독립된 미용사법을 조속히 입법하여야 한다.

1961년 '이용사및미용사법'으로 미용사면허제도를 입법화한 이래 40여년간 미용사면허제도는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순 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미용 수준이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용사면허의 공신력을 높이고 그 제

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개선안들을 입법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르게 된 미용사면허제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Amelioration of the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in Korea

SEO, Hee-Wo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problems with the current cosmetologist licensing system in Korea under the perception that the system is crucial for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on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study's results, I suggest comprehensive ways to improve the system as follows:

First, a person who issues cosmetologist licenses should b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current system, which stipulates that mayors or governors of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or provinces issue the licenses, is hardly considered legitimate in that their competence has little relevance to cosmetologist's job. Therefore, the issuer should be revis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ho is responsible for institutions related to cosmetologists and hairdressing business.

Secondly,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 unified system under

which all would-be cosmetologists obtain licenses through a licensing exam. The existing system, which prescribes that those who completed a specified course of study or acquire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s are entitled to licenses, raises a problem of a double standard since it requires those who obtained the certificates to apply for the license. Of many ways proposed to fix this problem, it will be most reasonable to eliminate the national certificate from the requirements for license, unifying the system as a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Thirdly, the "acquisition of license without an exam" provision should be abolished. Under the current system, those who completed a hairdressing-related course of study at high schools (high school graduates) or higher technical schools (those who finished the one-year or longer curriculum) are entitled to a license without an exam. This system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treats different levels of academic performance equally and is quite unfair in terms of equity with other licensing systems.

Fourth, the cosmetologist license exams should b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ho deals with hairdressing affairs. However, if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with administering the exams, it is worth considering ways of entrusting the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of Korea with doing it.

Fifth, application qualifications for cosmetologist license exams should be limited to those who completed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The current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 requires no particular application qualifications as prescribed i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Yet, cosmetologist licensing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qualify only those who finished a certain period of course of

study on hairdressing to apply for the cosmetologist license exams. That is because hairdressing needs requires specialized techniques. Thus, we should limit application qualification for the exam to only those who finished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Sixthly, we should introduce a esthetician license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only licensed cosmetologists can engage in skin-care business. It is irrational in light of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Moreover, give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kin-care business community, esthetician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s an independent occupation.

Lastly, separate legislation concerning cosmetologists should be enacted. It is unreasonable that the law regarding cosmetologists and the hairdressing business is included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 separate law that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ystem and the particularity of the business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Since 1961 when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was enacted, the licensing system has not changed a lot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amendments, failing to radically rectify irrational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Korea's hairdressing is now as advanced as that of developed countries, the above mentioned proposals should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policy as ways to enhance public confidence in the cosmetologist license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icensing system.

참 고 문 헌

고혜정, "해외 미용관련 국제인증과정 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 수원여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과제, 2002.

김기연, "피부미용 자격증에 대해", New Esthetics 2002/55호, 서울 :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2002, pp.19-20.

김미강, "국가자격검정제도의 문제점과 미용업계의 실태에 관한 실증연구 : 대구지역의 미용관련종사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대구가톨릭대, 2002.

김봉인, "피부미용사 자격 면허제도 신설 시급", 미용정보신문 제277호 (2003.1.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3.

김순원,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김순원 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활용도 조사",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김창의, "직능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15, 서울 : 한국전통상학연구회, 1999.12., pp.55-74.

김춘자, "미용사, 면허제도 개선 시급하다", 미용정보신문 제279호(2003.2.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3.

김한식, "미용업의 개선점과 미용관련 전문대학 학생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여전논문집 2, 광주 : 광주여자전문대학, 1994.2.

김현수 외, "민간자격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_____, "직업교육기관 이수자의 국가자격 수여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박성수, "인적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새로운 '자격'정책", 교육마당21 통권241호,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2.3.

박영례, "피부미용인 여러분 하나로 뭉칩시다", 피부미용신문 제5호(2003.3.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2003.

박재옥, "등록제도에 관한 현행법 검토", 법제 496호, 서울 : 법제처, 1999. 4., pp.51-68.

박충선, "간호사의 면허부여 및 보수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목포전문대학 논문집 제22집1호, 목포 : 목포전문대학, 1998.2., pp.435-455.

박태용,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주 : 충북대학교, 1996.

서용호 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산업사회 기여도 조사",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1997.

서준호 외,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서준호, 『민간자격정보』,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서창교 외, "국가기술자격의 효과 분석",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손진상 외, "영업규제제도에 관한 연구", 안동대경영연구 제2권 제1호, 안동 : 안동대, 1998.10., pp.181-202.

신광호, "민간자격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서울산업대 공업기술교육 84, 서울 : 서울산업대학교, 1998.12., pp.68-81.

신명훈 외, "기술·기능계 자격의 질 관리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_____,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신명훈, "자격제도 국제비교 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신용철, "면허와 자격의 비교 연구",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안혜정, "법률서비스 시장에 있어서의 진입규제와 소비자이익",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1996.

안희석, "민간자격제도와 대학의 지식산업 연계방안", 전문대학교육 28, 1998.3. pp.27-33.

우병렬, "직업면허제도 관련법제 연구", 법제 468, 서울 : 법제처, 1996.12., pp.64-78.

이꽃메, "일제시대 우리나라 간호제도에 관한 보건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1999.

이동임 외,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 방안",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이상락, "의료기사의 면허취득과 실태", 대구보전논문(인문·사회·자연과학) 12, 대구 : 대구보건전문대학, 1991.2., pp.399-420.

이순혜, "피부관리사 자격증 제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피부미용신문 제5호(2003.3.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2003, p.4.

이승우, "각종 면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공법연구 28(4-2), 서울 : 한국공법학회, 2000.6.

이정표 외,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분석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이주영 외, "한국미용사자격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7권1호, 서울 : 한국미용학회, 2001. 6. pp.23-30.

이한웅, "미용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미용학회 포럼 자료, 2000.12.

_____, "한국 미용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대한피부미용교육학술지 창간호, 2003.5, pp.41-55.

_____, "행복추구권과 피부미용사 면허제도", New Esthetics 2002/56호, 서울 :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2002, pp.19-20.

_____, "'불편하게 하는 법'으로의 개정은 안 된다.", 미용정보신문 2002.7.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2.

_____, "'피부', 미용사 독점적 업무영역 될 수 없어", 피부미용신문 창간호(2003.1.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2003.

_____, "1년 유예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만 해당", 피부미용신문 제6호(2003.3.15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2003.

_____, "독립된 미용사법 제정 시급하다", 미용정보신문 제277호(2003.1.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3.

_____, "미용사 업무 범위 구분 바람직", 미용정보신문 제278호(2003.1.15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3.

_____, "미용사 면허, 반드시 시험거쳐야", 미용정보신문 제279호(2003.2.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3.

_____, "미용사 이원적 자격체계 개선 시급하다", 미용정보신문 제280호(2003.2.15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3.

_____, "시험 통해 미용사면허 부여…제도 일원화 시급", 미용정보신문 제281호(2003.3.1자), 서울 : 미용정보신문사, 2003.

이호용, 미용인을 위한 위생법규해설, 서울 : 비전캐릭터, 1999.

장재호, "직업면허에 관한 소고", 고용동향분석 2002 1/4분기, 서울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2002.6., pp.153-166.

정태화, "민간자격제도의 도입과 전문대학의 역할", 전문대학교육 31, 1998.12., pp.57-67.

조은자, "피부미용인 여러분! 바로 알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피부미용신문 제3호(2003.2.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2003.

조정윤 외, "21세기를 향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중위생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공청회 자료 2002-04),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 청년사, 2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한영숙,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한 단계씩 다가가자", 피부미용신문 제7호(2003.4.1자), 서울 : 피부미용신문사, 200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서울 : 박영사, 2002.

Dalton, John, *The Professional Cosmetologist*, MN : West Publishing Company, 1995.

Milady, *Milady's Standard Textbook of Cosmetology*, NY : Milady / SalonOvations Publishing, 2000.

Pivot Point, *Salon Fundamentals, A Resource for Your Cosmetology Career,* Illinois :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2000.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California State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January, 2001.

Cosmetology Performance Criteria, California State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2001.

<부록 1>

일본의 미용사법(美容師法)

제　　정 1957년 6월 3일 법률제163호
최종개정 2001년 6월 29일 법률제87호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미용사의 자격을 정함과 동시에, 미용업무가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규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이 법률에서 '미용'(美容)이란, 퍼머넌트웨이브, 결발(結髮), 화장 등의 방법의 의해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미용사'(美容師)란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의 면허를 받아 미용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미용소'(美容所)란 미용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면허) ①미용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아 미용사가 될 수 있다.
②미용사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1. 심신장해(心身障害)에 의해 미용사의 업무를 적정하게 행할 수 없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厚生労働省令)이 정하는 자
2. 제 6 조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 3 항 규정에 의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 4 조 (미용사시험) ①미용사시험은 미용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해서 실시한다.
②미용사시험은 후생노동대신이 실시한다.
③미용사시험은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제26호) 제56조에 규정하는 자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미용사양성시설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미용사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④미용사양성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양성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도록 한다. 다만, 통신과정은 주간과정 또는 야간과정을 두는 미용사양성 시설에 한하여 둘 수 있다.
1. 주간과정
2. 야간과정
3. 통신과정
⑤제 3 항에 규정하는 미용사양성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정령(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행할 수 있다.
⑥앞의 각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미용사시험, 미용사양성 시설 기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의 2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①후생노동대신은 그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게 미용사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이하 '시험사무'라 한

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은 시험사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한다.

제 4 조의 3 (지정의 기준)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다음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동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원, 설비, 시험사무의 실시방법, 기타 사항에 관한 시험사무의 실시계획이 시험사무를 적정(適正)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데 적절한 것일 것.
2. 전호의 시험사무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및 기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3. 신청자가 시험사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에 의해서 시험사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동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민법(1896년 법률제89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이외의 자인 경우
2. 제 4 조의 15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인 경우
3. 그 임원(役員)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가. 이 법률을 위반해서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제 4 조의 6 제 2 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해임되고, 그 해임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 4 조의 4 (지정의 공시 등) ①후생노동대신은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했을 때는,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정을 한 날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은 그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주전까지 그 취지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5 삭제

제 4 조의 6 (임원 선임 및 해임) ①지정시험기관의 임원 선임 및 해임은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이 이 법률(이에 의거한 명령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제 4 조의 9 제 1 항에 규정하는 시험사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시험사무에 관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때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해당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4 조의 7 (시험위원) ①지정시험기관은 시험사무 중 미용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유무판정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그 사무를 하게 해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은 시험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은 시험위원을 선임한 때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험위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마찬가지다.
④전조 제2항의 규정은 시험위원의 해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조의8 (비밀유지 의무 등) ①지정시험기관의 임원 혹은 직원(시험위원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음) 또는 이들 직(職)에 있었던 자는 시험사무에 관하여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시험사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1907년 법률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4조의9 (시험사무규정) ①지정시험기관은 시험사무 개시 전에 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사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②시험사무규정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③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한 시험사무규정이 시험사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데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의10 (사업계획의 인가 등) ①지정시험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②지정시험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 후 3월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11 (장부 비치) 지정시험기관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의12 (감독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시험사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사무와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의13 (보고·검사 등) ①후생노동대신은 시험사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사무의 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지정시험기관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험사무의 상황 또는 설비,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14 (시험사무의 중지 및 폐지) ①지정시험기관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

를 받지 않으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休止)하거나 또는 폐지(廢止)해서는 아니 된다.

②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또는 폐지에 의해 시험사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가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15 (지정 취소 등) ①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제4조의3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의6제2항(제4조의7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의 9제3항 또는 제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3. 제4조의7제1항, 제4조의10, 제4조의11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조의9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시험사무규정에 의하지 않고 시험사무를 시행한 때
5.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③후생노동대신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16 (지정 등의 조건) ①제4조의2제1항, 제4조의6제1항, 제4조의9제1항, 제4조의10제1항 또는 제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인가 또는 허가에는 조건을 붙이고, 그리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건은 당해 지정, 인가 또는 허가에 관계되는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 당해 지정,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17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시험사무 실시) ①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시험사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②후생노동대신은 지정시험기관이 제4조의14제1의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및 지정시험기관이 천재(天災), 기타 사유에 의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가 곤란해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시하도록 한다.

③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시하기로 한 때 또는 직접 실시하고 있던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18 (수험수수료) ①미용사시험을 보고자 하는 자는 국가(지정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관련된 시험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시험기관)

에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시험기관에 납부된 수험수수료는 지정시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의19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제4조의2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정시험기관 및 그 실시하는 시험사무 그리고 시험사무의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5조 (미용사 명부) 후생노동성에 미용사 명부를 갖추고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제5조의2 (등록 및 면허증 교부) ①미용사의 면허는 미용사시험에 합격 한 자의 신청에 의해 미용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②후생노동대신은 미용사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미용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5조의2의2 (의견 청취) 후생노동대신은 미용사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1호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동항 규정에 의해 미용사 면허를 주지 않기로 한 때는 사전에 해당신청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요구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지정등록기관 지정) ①후생노동대신은 그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미용사의 등록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등록기관의 지정은 등록사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제5조의4 (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 적용 등) ①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제5조 중 '후생노동성'은 '지정등록기관'으로, 제5조의2제2항 중 '후생노동대신'은 '지정등록기관'으로, '미용사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미용사면허증'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등록에 관계되는 자에게 미용사면허증명서'로 한다.

②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미용사의 등록 또는 미용사면허증 혹은 미용사면허증명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혹은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정등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등록기관에 납부된 수수료는 지정등록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의5 (준용)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6 및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7까지의 규정은 지정등록기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이들 규정 중 '시험사무'는 '등록사무'로, '시험사무규정'은 '등록사무규정'으로, 제4조의3 중 '전조 제2항'은 '제5조의3제2항'으로,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10제1항, 제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4조의16제1항 중 '제4조의2

제1항'은 '제5조의3제1항'으로, 제4조의8제1항 중 '직원(시험위원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음)'은 '직원'으로, 제4조의15제2항제2호 중 '제4조의6제2항(제4조의7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4조의6제2항'으로, 동항 제3호 중 '제4조의7제1항, 제4조의10'은 '제4조의10'으로 고쳐 읽도록 한다.

제5조의6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제3조 및 제5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미용사의 면허, 미용사 명부의 등록, 미용사면허증, 미용사면허증명서와 지정등록기관 및 그 실시하는 등록사무, 등록사무의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6조 (무면허 영업 금지) 미용사가 아니면 미용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미용소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 금지) 미용사는 미용소 이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취해야 하는 조치) 미용사는 미용의 업무를 할 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부에 접촉하는 천이나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청결히 유지할 것.
2. 피부에 접촉하는 천을 손님 1인마다 바꾸고,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손님 1인마다 소독할 것.
3. 기타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조례로 정하는 위생상 필요한 조치.

제9조 (건강진단) 삭제

제10조 (면허 취소 및 업무 정지) ①후생노동대신은 미용사가 제3조제2항제1호의 자에 해당할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는 미용사가 제7조 또는 제8조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미용사가 전염성질병에 걸려 업무 종사가 공중위생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후생노동대신은 미용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위반한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라도 그 자가 그 취소 이유가 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기타 그 후 사정에 의해 다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미용소 위치 등의 신고) ①미용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용소의 위치, 구조설비, 제12조의 3제1항에 규정한 관리미용사 및 종업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미용소 개설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그 미용소를 폐지한 때에는 신속히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미용소의 사용) 미용소 개설자는 그 미용소의 구조설비에 대해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의 검사를 받아, 그 구조설비가 제13조의 조치를 취하는

데 적합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당해 미용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2 (지위 승계) ①제11조제 1 항의 신고를 한 미용소 개설자에 대해서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영업을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 있은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해 해당 영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해 해당영업을 승계한 법인은 해당 신고를 한 미용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미용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3 (관리자) 미용사인 종업원의 수가 평상시 2인 이상인 미용소의 개설자는 해당 미용소(해당 미용소에서의 미용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용소마다 관리자 (이하 "관리미용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미용소 개설자가 제 2 항 규정에 의해 관리미용사가 될 수 있는 자일 때는 그 자가 직접 주로 관리하는 하나의 미용소에 대해 관리미용사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②관리미용사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미용의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지정한 강습회(講習会)의 과정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 (미용소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미용소 개설자는 미용소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2. 소독설비를 설치할 것.
3. 채광, 조명 및 환기를 충분히 할 것.
4. 기타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조례로 정하는 위생상 필요한 조치.

제14조 (현장조사) ①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직원에게 미용소에 출입하여 제 8 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4 조의 13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 (폐쇄 명령) ①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는 미용소 개설자가 제12조의 3 혹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미용사가 아닌 자 혹은 제10조제 2 항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자에게 그 미용소에서 미용 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미용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당해 미용소에서 미용 업무를 하는 미용사가 제 8 조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다만, 당해 미용소 개설자가 미용사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미용사회) ①미용사는 미용 업무에 관련된 기술 향상을 꾀하기 위해 미용사회(美容師会)를 조직하고, 미용사 육성 그리고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이

바지할 수 있다.
②2 이상의 미용사회는 미용 업무에 관련된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조직하고, 미용사의 육성과 회원 및 그 구성원의 지도와 연락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제16조의 2 (권한의 위임) ①이 법률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국장(地方厚生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지국장(地方厚生支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경과조치) 이 법률에 의거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 2 (벌칙) 제 4 조의 8 제 1 항(제 5 조의 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 3 제 4 조의 15 제 2 항 (제 5 조의 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무 또는 등록사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지정시험기관 또는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지정시험기관, 지정등록기관 및 지정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 조의 11(제 5 조의 5 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2. 제 4 조의 13 제 1 항(제 5 조의 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받고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보고, 또는 이들 규정에 의한 출입 혹은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 4 조의 14 제 1 항(제 5 조의 5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사무 또는 등록사무의 전부를 폐지한 때

제1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용소를 사용한 자
4.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소의 폐쇄처분을 위반한 자

제19조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다른 자의 업무에 관해서 전조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

제20조 (読替규정) 제10조제 2 항,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 2 항, 제14조제 1 항 및 제15조 중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는 지역보건법(1947년 법률제101호)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정령이 정하는 시(市) 또는 특별구(特別區)에 있어서는 '시장(市長)' 또는 '구장(區長)'으로 고쳐 읽도록 한다.

제21조 (불복신청)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사무에 관계되는 처분(시험 결과에 대한 처분을 제외한다)이나 부작위 또는 지정등록기관이 행하는 등록사무에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제160호)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부록 2>

日本美容師法

(昭和三十二年六月三日)
(法律第百六十三号)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美容師の資格を定めるとともに、美容の業務が適正に行われるように規律し、もつて公衆衛生の向上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で「美容」とは、パーマネントウエーブ、結髪、化粧等の方法により、容姿を美しくすることをいう。

2　この法律で「美容師」とは、厚生労働大臣の免許を受けて美容を業とする者をいう。

3　この法律で「美容所」とは、美容の業を行うために設けられた施設をいう。

(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免許)

第三条　美容師試験に合格した者は、厚生労働大臣の免許を受けて美容師になることができる。

2　美容師の免許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には、与えないことがある。

一　心身の障害により美容師の業務を適正に行うことができない者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

二　第六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

三　第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免許の取消処分を受けた者

(昭六〇法九〇　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平一三法八七　一部改正)

(美容師試験)

第四条　美容師試験は、美容師として必要な知識及び技能について行う。

2　美容師試験は、厚生労働大臣が行う。

3　美容師試験は、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十六号)第五十六条に規定する者であつて、厚生労働大臣の指定した美容師養成施設におい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期間以上美容師になるのに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修得したものでなければ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4　美容師養成施設は、次の各号に掲げる養成課程の全部又は一部を設けるものとする。ただし、通信課程は、昼間課程又は夜間課程を設ける美容師養成施設に限つて、設けることができる。

一　昼間課程

二　夜間課程

三　通信課程

5　第三項に規定する美容師養成施設の指定に関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6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美容師試験、美容師養成施設その他前各項の規定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昭六〇法九〇　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八七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指定試験機関の指定)

第四条の二　厚生労働大臣は、その指定する者(以下「指定試験機関」という。)に、美容師試験の実施に関する事務(以下「試験事務」という。)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指定試験機関の指定は、試験事務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指定の基準)

第四条の三　厚生労働大臣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が次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てはならない。

一　職員、設備、試験事務の実施の方法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の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計画が試験事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に適切なものであること。

二　前号の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計画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に必要な経理的及び技術的な基礎を有するものであること。

三　申請者が、試験事務以外の業務を行つている場合には、その業務を行うことによつて試験事務が不公正になるおそれがないこと。

2　厚生労働大臣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た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てはならない。

一　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三十四条の規定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以外の者であること。

二　第四条の十五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であること。

三　その役員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こと。

イ　この法律に違反して、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つた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ロ　第四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より解任され、その解任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経過しない者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指定の公示等)

第四条の四　厚生労働大臣は、第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したときは、指定試験機関の名称及び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並びに当該指定をした日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指定試験機関は、その名称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変更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その旨を厚生労働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第四条の五　削除

(平七法一〇九)

(役員の選任及び解任)

第四条の六　指定試験機関の役員の選任及び解任は、厚生労働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の役員が、こ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又は処分を含む。)若しくは第四条の九第一項に規定する試験事務規程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き、又は試験事務に関し著しく不適当な行為をした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当該役員を解任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試験委員)

第四条の七　指定試験機関は、試験事務のうち、美容師として必要な知識及び技能を有するかどうかの判定に関する事務を行う場合には、試験委員にその事務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2　指定試験機関は、試験委員を選任しようとする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要件を備える者のうちから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指定試験機関は、試験委員を選任したとき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く、その旨を厚生労働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試験委員に変更があつたときも、同様とする。

4　前条第二項の規定は、試験委員の解任について準用す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秘密保持義務等)

第四条の八　指定試験機関の役員若しくは職員(試験委員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又はこれらの職にあつた者は、試験事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2　試験事務に従事する指定試験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その他の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

(昭六〇法九〇　追加)

(試験事務規程)

第四条の九　指定試験機関は、試験事務の開始前に、試験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程(以下「試験事務規程」という。)を定め、厚生労働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試験事務規程で定めるべき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認可をした試験事務規程が試験事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上不適当となつた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これ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事業計画の認可等)

第四条の十　指定試験機関は、毎事業年度、事業計画及び収支予算を作成し、当該事業年度の開始前に(第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日の属する事業年度にあつては、その指定を受けた後遅滞なく)、厚生労働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2　指定試験機関は、毎事業年度、事業報告書及び収支決算書を作成し、当該事業年度の終了後三月以内に、厚生労働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帳簿の備付け)

第四条の十一　指定試験機関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試験事務に関する事項で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ものを記載した帳簿を備え、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監督命令)

第四条の十二　厚生労働大臣は、試験事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試験事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報告、検査等)

第四条の十三　厚生労働大臣は、試験事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指定試験機関に対し、試験事務の状況に関し必要な報告を求め、又はその職員に、指定試験機関の事務所に立ち入り、試験事務の状況若しくは設備、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行う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の請求があつたとき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試験事務の休廃止)

第四条の十四　指定試験機関は、厚生労働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てはな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の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止又は廃止により試験事務の適正かつ確実な実施が損なわれるおそれがない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前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してはならない。

3　厚生労働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指定の取消し等)

第四条の十五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第四条の三第二項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四条の三第一項各号の要件を満たさなくなつたと認められるとき。

二　第四条の六第二項(第四条の七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条の九第三項又は第四条の十二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三　第四条の七第一項、第四条の十、第四条の十一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四　第四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より認可を受けた試験事務規程によらないで試験事務を行つたとき。

五　不正な手段により第四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とき。

3　厚生労働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取り消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五法八九　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指定等の条件)

第四条の十六　第四条の二第一項、第四条の六第一項、第四条の九第一項、第四条の十第一項又は第四条の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認可又は許可には、条件を付し、及び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条件は、当該指定、認可又は許可に係る事項の確実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最小限度のものに限り、かつ、当該指定、認可又は許可を受ける者に不当な義務を課することとなるものであつてはならない。

(平七法一〇九　全改)

(厚生労働大臣による試験事務の実施)

第四条の十七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の指定をしたときは、試験事務を行わないものとする。

2　厚生労働大臣は、指定試験機関が第四条の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て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休止したとき、第四条の十五第二項の規定により指定試験機関に対し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又は指定試験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り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実施することが困難となつ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試験事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ものとする。

3　厚生労働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こととするとき、又は自ら行つていた試験事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受験手数料)
第四条の十八　美容師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国(指定試験機関が当該試験に係る試験事務を行う場合にあつては、指定試験機関)に、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受験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試験機関に納められた受験手数料は、指定試験機関の収入とす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一部改正)
(厚生労働省令への委任)
第四条の十九　第四条の二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指定試験機関及びその行う試験事務並びに試験事務の引継ぎに関し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美容師名簿)
第五条　厚生労働省に美容師名簿を備え、美容師の免許に関する事項を登録する。
(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登録及び免許証の交付)
第五条の二　美容師の免許は、美容師試験に合格した者の申請により、美容師名簿に登録することによつて行う。
2　厚生労働大臣は、美容師の免許を与えたときは、美容師免許証を交付する。
(平七法一〇九　追加、平一一法一六〇　平一三法八七　一部改正)
(意見の聴取)
第五条の二の二　厚生労働大臣は、美容師の免許を申請した者について、第三条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認め、同項の規定により美容師の免許を与え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当該申請者にその旨を通知し、その求めがあつたときは、厚生労働大臣の指定する職員にその意見を聴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平一三法八七　追加)
(指定登録機関の指定)
第五条の三　厚生労働大臣は、その指定する者(以下「指定登録機関」という。)に、美容師の登録の実施等に関する事務(以下「登録事務」という。)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2　指定登録機関の指定は、登録事務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平七法一〇九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指定登録機関が登録事務を行う場合の規定の適用等)
第五条の四　指定登録機関が登録事務を行う場合における第五条及び第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五条中「厚生労働省」とあるのは「指定登録機関」と、第五条の二第二項中「厚生労働大臣」とあるのは「指定登録機関」と、「美容師の免許を与えたときは、美容師免許証」とあるのは「前項の規定による登録をしたときは、当該登録に係る者に美容師免許証明書」とする。
2　指定登録機関が登録事務を行う場合において、美容師の登録又は美容師免許証若しくは美容師免許証明書の記載事項の変更若しくは再交付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指定登録機関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登録機関に納められた手数料は、指定登録機関の収入とする。
(平七法一〇九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準用)
第五条の五　第四条の三、第四条の四、第四条の六及び第四条の八から第四条の十七までの規定は、指定登録機関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

「試験事務」とあるのは「登録事務」と、「試験事務規程」とあるのは「登録事務規程」と、第四条の三中「前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五条の三第二項」と、第四条の四第一項、第四条の十第一項、第四条の十五第二項第五号及び第四条の十六第一項中「第四条の二第一項」とあるのは「第五条の三第一項」と、第四条の八第一項中「職員(試験委員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とあるのは「職員」と、第四条の十五第二項第二号中「第四条の六第二項(第四条の七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とあるのは「第四条の六第二項」と、同項第三号中「第四条の七第一項、第四条の十」とあるのは「第四条の十」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平七法一〇九　追加)

(厚生労働省令への委任)

第五条の六　第三条及び第五条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美容師の免許、美容師名簿の登録、美容師免許証、美容師免許証明書並びに指定登録機関及びその行う登録事務並びに登録事務の引継ぎに関し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平七法一〇九　追加、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無免許営業の禁止)

第六条　美容師でなければ、美容を業としてはならない。

(美容所以外の場所における営業の禁止)

第七条　美容師は、美容所以外の場所において、美容の業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政令で定める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美容の業を行う場合に講ずべき措置)

第八条　美容師は、美容の業を行うときは、次に掲げる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皮ふに接する布片及び皮ふに接する器具を清潔に保つこと。

二　皮ふに接する布片を客一人ごとに取り替え、皮ふに接する器具を客一人ごとに消毒すること。

三　その他都道府県が条例で定める衛生上必要な措置

(平一一法八七　一部改正)

第九条　削除

(昭五八法八三)

(免許の取消及び業務の停止)

第十条　厚生労働大臣は、美容師が第三条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免許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知事は、美容師が第七条若しくは第八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又は美容師が伝染性の疾病にかかり、その就業が公衆衛生上不適当と認めるときは、期間を定めてその業務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3　厚生労働大臣は、美容師が前項の規定による業務の停止処分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免許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取消処分を受けた者であつても、その者がその取消しの理由となつた事項に該当しなくなつたとき、その他その後の事情により再び免許を与えるのが適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に至つたときは、再免許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昭五八法八三　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八七・平一一法一六〇　平一三法八七　一部改正)

(美容所の位置等の届出)

第十一条　美容所を開設しようとする者は、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美容所の位置、構造設備、第十二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管理美容師その他の従業者の氏名その他必要な事項をあらかじめ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美容所の開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事項に変更を生じたとき、又はその美容所

を廃止したときは、すみやかに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昭四三法九六　平八法一〇七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美容所の使用）
第十二条　美容所の開設者は、その美容所の構造設備について都道府県知事の検査を受け、その構造設備が第十三条の措置を講ずるに適する旨の確認を受けた後でなければ、当該美容所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
（地位の承継）
第十二条の二　第十一条第一項の届出をした美容所の開設者について相続、合併又は分割（当該営業を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があつたときは、相続人（相続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全員の同意により当該営業を承継すべき相続人を選定したときは、その者）、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又は分割により当該営業を承継した法人は、当該届出をした美容所の開設者の地位を承継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美容所の開設者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遅滞なく、その事実を証する書面を添えて、その旨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平八法一〇七　追加、平一二法九一　一部改正）
（管理者）
第十二条の三　美容師である従業者の数が常時二人以上である美容所の開設者は、当該美容所（当該美容所における美容の業務を含む。）を衛生的に管理させるため、美容所ごとに、管理者（以下「管理美容師」という。）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美容所の開設者が第二項の規定により管理美容師となることができる者であるときは、その者が自ら主として管理する一の美容所について管理美容師となることを妨げない。
2　管理美容師は、美容師の免許を受けた後三年以上美容の業務に従事し、かつ、厚生労働大臣の定める基準に従い都道府県知事が指定した講習会の課程を修了した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昭四三法九六　追加、平八法一〇七　旧第十二条の二繰下、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
（美容所について講ずべき措置）
第十三条　美容所の開設者は、美容所につき、次に掲げる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常に清潔に保つこと。
二　消毒設備を設けること。
三　採光、照明及び換気を充分にすること。
四　その他都道府県が条例で定める衛生上必要な措置
（平一一法八七　一部改正）
（立入検査）
第十四条　都道府県知事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職員に、美容所に立ち入り、第八条又は前条の規定による措置の実施の状況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第四条の十三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について準用する。
（昭六〇法九〇・平七法一〇九　平一三法八七　一部改正）
（閉鎖命令）
第十五条　都道府県知事は、美容所の開設者が、第十二条の三若しくは第十三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又は美容師でない者若しくは第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業務の停止処分を受けている者にその美容所において美容の業を行わせたときは、期間を定めて当該美容所の閉鎖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当該美容所において美容の業を行う美容師が第八条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ただし、当該美容所の開設者が美容師の当該違反行為を防止するために

相当の注意及び監督を尽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昭四三法九六　昭五八法八三　平八法一〇七　一部改正)
(美容師の会)
第十六条　美容師は、美容の業務に係る技術の向上を図るため、美容師会を組織して、美容師の養成並びに会員の指導及び連絡に資することができる。
2　二以上の美容師会は、美容の業務に係る技術の向上を図るため、連合会を組織して、美容師の養成並びに会員及びその構成員の指導及び連絡に資することができる。
(平七法一〇九　旧第十七条繰上)
(権限の委任)
第十六条の二　この法律に規定する厚生労働大臣の権限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厚生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地方厚生局長に委任された権限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厚生支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平一一法一六〇　追加)
(経過措置)
第十七条　この法律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平七法一〇九　追加)
(罰則)
第十七条の二　第四条の八第一項(第五条の五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三法八七　一部改正)
第十七条の三　第四条の十五第二項(第五条の五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試験事務又は登録事務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指定試験機関又は指定登録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三法八七　一部改正)
第十七条の四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指定試験機関又は指定登録機関の役員又は職員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四条の十一(第五条の五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帳簿を備えず、帳簿に記載せず、若しくは帳簿に虚偽の記載をし、又は帳簿を保存しなかつたとき。
二　第四条の十三第一項(第五条の五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報告を求められて、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これらの規定による立入り若しくは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とき。
三　第四条の十四第一項(第五条の五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試験事務又は登録事務の全部を廃止したとき。
(昭六〇法九〇　追加、平七法一〇九　平一三法八七　一部改正)
第十八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第六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　第十一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三　第十二条の規定に違反して美容所を使用した者
四　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当該職員の検査を拒み、妨げ、又は忌避した者
五　第十五条の規定による美容所の閉鎖処分に違反した者
(平一三法八七　全改)

第十九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て前条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各本条の刑を科する。

(平一三法八七　旧第二十一条繰上　一部改正)

(読替規定)

第二十条　第十条第二項、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二第二項、第十四条第一項及び第十五条中「都道府県知事」とあるのは、地域保健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一号)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で定める市又は特別区にあつては、「市長」又は「区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昭五八法八三　平五法八九　平六法八四　平八法一〇七　一部改正、平一三法八七　旧第二十二条繰上)

(不服申立て)

第二十一条　指定試験機関が行う試験事務に係る処分(試験の結果についての処分を除く。)若しくは不作為又は指定登録機関が行う登録事務に係る処分若しくは不作為については、厚生労働大臣に対し、行政不服審査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六十号)による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昭三七法一六一　追加、昭六〇法九〇　平六法八四　平七法一〇九　平一一法八七　平一一法一六〇　一部改正、平一三法八七　旧第二十三条繰上)

附　則(省略)